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점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010년 이후 시범운용 효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 계 학 과

이 영 숙

2011년 8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점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2010년 이후 시범운용 효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정 순 여

이 영 속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이영속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년 8월

A Study on Improvements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Focusing on the effect of demonstration operation since 2010-

Young-Suk Lee

(Supervised by professor Soon-Yeo Ju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1.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1. 연구의 방법	3
2. 연구의 범위	4
제2장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및 선행연구	5
제1절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	5
1. 부가가치세제상 세금계산서 제도	5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16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	23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범운용 및 본격 시행	23
2.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념	23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5
제3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8
1. 재화·용역의 거래 시기	28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30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31
4.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 및 전송기한	31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최대 가능기한	35
6.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35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요약	3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이점	37

제3장 연구 설계	42
제1절 연구방법	42
제2절 설문지구성 및 내용	43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44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에 대한 만족도	44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운용의 효과성	44
4.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44
5.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45
제3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45
1. 자료의 수집	45
2. 분석방법	46
제4장 실증분석	47
제1절 응답자의 특성	47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운용효과 분석	49
1.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에 관한 만족도	49
2. 제도도입의 운용효과에 관한 만족도	50
3. 운용상 문제점에 관한 분석	51
4. 운용상 문제점에 관한 특성별 교차분석	57
5.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63
제3절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세부내용 분석결과	64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65
2.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70

제5장 결 론	71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71
제2절 연구 결과의 시사점	74
1. 법률적 시사점	74
2. 제도적·정책적 시사점	7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84
【참 고 문 헌】	86
【설 문 지】	89

<표 목 차>

【표 2-1】	9
【표 2-2】	16
【표 2-3】	20
【표 2-4】	21
【표 2-5】	24
【표 2-6】	29
【표 2-7】	31
【표 2-8】	36
【표 3-1】	43
【표 3-2】	46
【표 3-3】	46
【표 4-1】	47
【표 4-2】	49
【표 4-3】	50
【표 4-4】	51
【표 4-5】	55
【표 4-6】	57
【표 4-7】	60
【표 4-8】	61
【표 4-9】	62
【표 4-10】	63
【표 4-11】	63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s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Focusing on the effect of demonstration operation since 2010-

Young-Suk Lee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active development of electronic trades since 2000, the market environment has gone through many changes including the expanded volume of electronic transactions, the diversification of transaction types, and digitalization of economy, and these changes are demanding the electronic issuance of tax invoice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value added tax system, moreover,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lement taxation infrastructures for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but conventional tax invoice system has a limitation of time in securing the transparency of transactions through cross checking and establishing the order of tax invoice exchange.

Thus,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ntroduced and enacted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n December 2009 by improv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t was to lay the foundation of fair taxation by analyzing the flow of tax invoices quickly, to enhance companies' convenience in invoice issuing, and to increase the saving of tax compliance cost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survey and analyze overall satisfaction with campaigns and education and the effect of the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and problems in businesses that participated in the demonstration operation of the system,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for advertising the system before enforcing the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s among individual obligors under the double entry system in 2012.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effect of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among demonstration operation businesses in Jeju do since 2010, the participants showed a positive response in their overall satisfaction with campaigns and education and the effect of the system in 2010. As to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however, their response was very negative in the saving effect of tax compliance costs. Moreover, many inconveniences in taxpayers' system operation were caused by difference in issuing time among issuance systems, difference in manual among systems (ASP/ERP) developed by private developers, etc.

Concerning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ound through the survey and analysis of this study, we divided them into legal and institutional political dimensions and ma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or legal implications, first, regulations on "tax credits for the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s" should be revised completely. Second, <issuing time> should be defined or standardized. For institu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first, the e Sero mass bulk issuance system of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should be improved. Second, simple and easy user manuals should be made and distributed. Third, systems (ASP/ERP) developed by private developers should be standardized or unified. Fourth,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on individual obligors under the double entry system in 2012, system guidance, campaigns and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sufficiently, and for this, policies for campaigns and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simple and easy user manuals should be prepared and

distributed to small businesses.

For the stable settlement of the electronic tax invoices system, which will be extended to all individual businesses, the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 way beneficial to both the government and taxpayers, and then it will lead the realization of fair taxation, the first task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Keywords: Value added tax, electronic tax invoices, tax invoices, false tax invoices, National Tax Administration, e-Sero, ASP, ERP, tax compliance cost, fair taxation

국문초록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점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010년 이후 시범운용 효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전자상거래의 본격적인 발전으로 거래규모의 증가 및 다양화, 경제의 디지털화 등 시장 환경이 확대되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졌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2009년 12월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신속하게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분석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전자적 발행의 필요성에 따른 편의성 제고,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를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운용 후, 사전 홍보교육 및 전반적인 도입효과에 대한 만족도, 시범 운용한 사업자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또한 2012년 개인 복식 부기의무자의 발급의무화에 앞서 제도 홍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목적을 둔다.

2010년 이후 제주도내 전자세금계산서 시범운용 사업자로부터 회수된 142부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홍보교육 및 도입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운용상 문제점에 있어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발급시스템간의 발급시기의 적용 차이, 민간구축(ASP/ERP)시스템 간의 전산매뉴얼 차이 등으로 납세자의 제도 운용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조사·분석결과 나타난 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법률적 및 제도적·정책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적 시사점으로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의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발급 시기>의 정의 규정 또는 <발급 시기>의 표준화를 들 수 있다.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국세청 e-세로 대량일괄 발급시스템 개선, 둘째 “간단하고 알기 쉬운 사용자 매뉴얼 제작 홍보”를 들 수 있다.

셋째 “민간구축(ASP/ERP)시스템 간 전산 매뉴얼의 표준화 또는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2012년 개인 복식 부기의무자의 발행의무화에 앞서 제도안 내 등 홍보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올바로 세우고 전산업무 적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에 “간단하고 알기 쉬운 사용자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충분한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전 개인사업자로 확대 운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부와 납세자 모두 상생(윈윈 Win Win)하는 제도로 운용되어야 국세행정의 제1과제인 공평과세 실현이 이루어 질 것이다.

주제어 :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국세청, e-세로, ASP, ERP, 납세협력비용, 공평과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조세수입에 있어 한해 징수하는 국세 중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세수(154.3조원) 중 47조원으로 30.5%이다.¹⁾ 전체세수가 전년대비 3.2조원 감소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년대비 7.3%(3.2조) 증가하였다. 간접세 중 일반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가 국가 재정운영에 필요한 세수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래 근거과세 확립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세인프라 제도 구현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 중에 가장 중추적이고도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세금계산서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보다 근거과세가 명확하여 세액 탈루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거래의 각 단계마다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서류가 세금계산서이다.

부가가치세제상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능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매출세액과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을 상호 대사할 수 있는 근거과세 자료로서의 기능이 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 또는 부당매입세액 공제 등을 검증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 기능 등을 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나 제도적 장치위에서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정상화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행 제도로는 부가가치

1) 국세청,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2011년 판

세 신고 후 자료상 색출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자료상 근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비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고 자료상 등의 신속한 색출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기 즉,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법에 정한 기한 내에 전송하는 제도로서 신속한 상호대사를 통해 위장·가공거래 등 탈세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전자상거래 등이 활성화 되면서 기존 중개업사업자 및 자체구축(ERP)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0년 12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있는 세법개정²⁾이 이루어졌다. 이때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 병행하여 발행·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전자상거래 등 거래의 유통구조를 감안한 사업자의 편의성 도모가 주목적이었다. 그런데 세계적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 전통적인 거래에서 전자거래로 그 거래유형이 복잡·다양하게 바뀌면서 세금계산서를 수동 작성·보관·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신고·납부 편의성 제고 취지에서 제도적으로 진정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졌다.

2008년 12월, 경제의 디지털화 등 도입여건이 성숙되자 본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거쳐 2010년 법인사업자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시행초기 납세자의 적응 혼란이 예상되어 발행의무화 시기를 1년 연장하게 되었고 2011년 법인사업자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였다. 2012년부터는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까지도 「발행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초기 시스템구축 비용과 운용·유지에 대한 비용이 따르게 되고,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등의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2) 장기용(2010), 「현행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영컨설팅연구 제10권 제3호 2010년 9월, (사)한국경영컨설팅학회

본 연구의 목적은 부가가치세제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제도에 있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i)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ii)제도의 도입 취지인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공평과세 실현, iii)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³⁾ 절감과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본 제도가 사업자와 정부,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 실제 운용상 또는 입법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제도도입 후 먼저 시행에 참여한 사업자⁴⁾의 전자세금계산서 운용효과를 중심으로 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2년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참여유도에 과세관청의 홍보교육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이루고, 제도 도입취지인 납세협력비용 절감,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공평과세⁵⁾ 실현과 공정사회⁶⁾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초적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0년 이후 시범운용한 제주도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운용효과를

3)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말한다. 반대의 개념으로 “징세비용”은 정부가 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고, 이 둘을 합해서 조세징수비용이라 한다.

4) 2010년 시범 운용한 제주지역 법인사업자와 2011년 시범운용한 개인사업자 중 일부(개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시행에 참여한 제주지역 사업자)

5) 공평과세란 같은 규모의 소득이나 수입이 있으면 같은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국제행정의 제1과제라 할 수 있다. 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조세이념이다.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공평이란 소득의 종류가 다른 동일한 소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공평이란 서로 다른 소득수준의 국민들 간에 세금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직적 공평 참조, 수평적 공평 참조-

6) “모든 사람이 노력하면 그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실질적 평등이 바로선 사회:공정사회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고 고름」, 공정은 「공평하고 올바름」의 뜻

중심으로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논문, 국제청 간행물 등을 기초로 문헌적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이론과 도입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자가 세정업무를 집행하면서 접했던 실무경험, 기업체 실무자등과 사전 면접 등, 법령 등의 연구를 통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았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처음으로 시행한 제주도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용경험을 토대로 효과와 문제점 등을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빈도·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내 세무업무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실무를 직접 경험한 기업체 실무담당자 등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심층면접⁷⁾을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및 범위를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다룬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개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성,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계산방법, 그리고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 배경, 입법연혁, 도입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범운용, 전자세금계산서 개념과 발행채널에 대해 살펴본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가산세에 대해 서술하였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한 다음 제3장에서 연구방법, 설문지 구성,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으로 응답자의 특성, 변수간 빈도·교차분석, 분석결과를 서술하고, 제5장 결론으로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결과의 시사점으로 법률적 시사점, 제도적·정책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서술하였다.

7) 심층면접에 참여한 전문가 등 : 제주대학교 교수, 프로그래머 관련 전문가, 세무관련 전문가, 제주대산학협력단 직원, 회사경영자, 「e-세로」발급 실무담당자, ASP사용 실무담당자, 세무서 실무담당자, 2011년4월20일,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세미나실, 설문문항 작성 및 심층면접 상황 녹취

제2장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및 선행연구

제1절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

1. 부가가치세제상 세금계산서 제도

1977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함으로써 EC형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이다. 이는 정부수립 이후의 세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영업세를 중심으로 복잡했던 간접세 체계를 간소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부가가치세 실시 이전의 우리나라 간접세제 구조는 11개 세목으로 그 세율도 상이하고 신고 시기 및 신고 절차도 복잡하여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매우 불편한 제도였었다. 이에 간접세제의 간소화를 위하여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로 통합 정비하였다.⁸⁾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수출하는 재화 등에 영의(0%) 세율을 적용하고 원자재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⁹⁾해 줌으로써 수출산업을 장려하였다. 또한 설비투자에 있어서도 부가가치세제 형태 중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택하여 사업설비 등 투자재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영업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누적적으로 중복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누적과세 현상이 발생되어 조세의 중립성 유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지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중립적이다. 또한 거래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의 누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영업세의 누적효과에서 오는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여, 기업의 수직적

8) 이승룡(2009),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면

9) 완전면세제도: 수출시 영(0)세율 적용하고, 수출하는 재화의 원자재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통합을 방지하고 기업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간접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결과가 된다.¹⁰⁾ 이와 같이 거래의 각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전단계세액공제의 방법으로 세액계산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세액의 징수가 이루어지게 된다.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이러한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음으로 거래당사자간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모두 상호대사가 되어지면서 거래의 흐름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탈세예방과 근거과세 기반의 공평과세 실현이 가능해진다.

(1) 부가가치세의 개념

기업은 생산과정에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의 3요소를 투입하여 생산 활동을 한다. 생산에 기여한 토지에 대하여 지대가 발생하고 노동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고 자본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기업 활동에 대한 보수로 이윤을 계상한다. 이와 같이 생산요소의 결합에 의한 기업 활동에 있어 지불된 지대, 임금, 이자, 이윤을 합한 금액을 부가가치(Value Added)라고 한다. 즉 부가가치는 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및 제공하는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한 가치 증가분을 의미한다. 모든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국가 단위로 합하면 국민총생산(GNP)이 된다.¹¹⁾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특성

우리나라가 도입하여 1977.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¹²⁾

1) 소비형 부가가치세제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지출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총 투자에 대한 완전 공제가 허용되므로 세제의 운영이 간편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소비형

10) 함영복(2001), “부가가치세탈세요인과 탈세영향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2면

11) “국민총생산(GNP)형 부가가치세”, 텍스넷 세무해설(www.taxnet.co.kr)

12) 김봉근, 전개서, 26-27면

부가가치세제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 형태로 현재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2) 전단계세액공제법 채택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인 가산법과 공제법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금·이자·지대·이윤 등을 직접 합계하는 가산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거래 전 단계에서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다.

3) 다단계거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모든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부가가치세를 다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은 구 영업세나 물품세 등과 같이 기업의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즉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4)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 등은 특정물품에 대하여 특정거래 단계에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인데 반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에 대하여 모든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5) 국세이며,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서로 다른 간접세에 속한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¹³⁾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과세유형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국민총생산형, 소득형 그리고 소비형으로 구분된다.

1) 국민총생산형(GNP) 부가가치세

국민총생산(GNP : Gross National Product)은 「일정기간 동안에 국민에 의하여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다. 이는 국민에 의하여 생산된 생산물의 가치만이 GNP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국민총생산형 부가가치세는 총 수입금액에서 중간재구입 금액만을 차감한 국민 총생산액이 부가가치라고 보는 것으로, 일정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국민총생산과 일치한다고 보는 방식이다.

2) 소득형(NNP) 부가가치세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은 생산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국민경제 전체에 걸쳐 합한 것을 의미하는데 국민순생산에 감가상각액을 합산하면 GNP와 같게 된다. 소득형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국민순생산으로 보기 때문에 GNP형 부가가치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GNP형 보다 투자촉진 효과는 있으나 감가상각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어렵고 투자금액이 감가상각비로 장기간에 걸쳐 공제되므로 소비형 보다 투자촉진 효과가 작다.

3)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으로 국민소득에서 투자지출을 제외한 소비지출 부분만을 과세대상인 부가가치로 본다. 즉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과 시설확충에 따른 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총생산형과 소득형 부가가치세 보다 투자촉진 효과가 크

13) 조덕규(200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면

며 세제의 운영이 편리하다.

【표 2-1】 부가가치세 유형별 특징 요약

분 류	국민총생산형	소득형	소비형
대상범위	총소비+총투자	총소비+순투자	총소비
과세표준	총매출-중간재	총매출-중간재-감가상각비	총매출-중간재-총투자
투자효과	낮음	중간	높음

(4) 부가가치세 과세방법¹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의 산출과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에는 가산법과 공제법의 2가지가 있고, 공제법은 다시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나누어진다.

1) 가산법(addition method)

가산법에 의한 계산방법은 부가가치 구성요소(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별로 부가가치를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거래 단계별로 세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생산요소 등을 합산하기 때문에 소비세가 아닌 법인세와 비슷한 기업세의 성격을 띤다.

2) 전단계거래액공제법(subtraction method)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은 일정기간 기업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투입된 매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 기업에서 기장을 성실히 처리한다는 기본 바탕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품목별 복수세율이나 면세제도 등이 있는 경우 중간거래 단계에서 처리가 복잡하고 세

14) 한장석·김용관, “부가가치세 2011”, (주)광교이텍스, 51-52면

부담의 전가가 불확실함으로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 method, credit method)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일정기간 동안 당해 기업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한 매입금액에 세율을 곱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및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매출, 매입 시 부과되고, 징수당한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부가가치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①세액계산이 간편하고, ②수출 등에 대해 완전면세(完全免稅)가 가능하며, ③세 부담의 전가가 명료하여 소비세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고, ④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해 거래 자료가 투명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5) 세금계산서 제도¹⁵⁾

1) 거래징수의 의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래징수(去來徵收)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징수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前段階稅額控除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되, 그 징수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의 수입 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차

15) 한장석·김용관, “부가가치세 2011”, 1157면, (주)광교이텍스

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제도에 의해 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로 확실하게 전가하고 있다.

2) 세금계산서의 의의

세금계산서(Tax invoice)라 함은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우리나라처럼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기능은 생산 및 유통 단계별 부가가치세 징수 및 그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3) 세금계산서의 기능

부가가치세법 제16조①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거래 시기)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사실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대금청구서, 장부기장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주요기능은 매출액 및 매출세액 계산명세서, 매입세액공제, 송장, 청구서 또는 영수증의 기능, 세금영수증 및 근거과세 자료의 기능 등으로 열거할 수 있겠다.¹⁶⁾ 특히 세금영수증 및 근거 과세자료의 기능¹⁷⁾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의 기능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나 발급받는 자 모두 이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동 조합 기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출되는 세금계산서를 대서 분석하여 불성실한 세금계산서 발행 자 및 수취 자를 가려내고 탈루거래를 양성화함으로써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법인세 분야에도 근거과세·공평과세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금계산

16) 최광·이우택, “부가가치세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소, 1988, 164면

17) 한장석·김용관, “부가가치세 2011”, 1164면, (주)광교이텍스

서의 근거과세자료 기능은 자기의 매출·매입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매입·매출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자 보관용 1매, 공급받는 자 보관용 1매, 총 2매를 발급하여 그 중 공급받는 자용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세법 시행규칙 16조 제1항). 그러나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라고 할 수는 없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등록된 일반사업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 및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수증,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 각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위탁판매나 공동매입 등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라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 된다¹⁸⁾(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5)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착오나 정정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부가세법16조 제1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연월일이다.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①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③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④공급품목 ⑤단가와 수량 ⑥공급연월일 ⑦거래의 종류 ⑧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중 된 사업장의 소재지

18) 한장석·김용관, “부가가치세 2011”, 1165면, (주)광교이텍스

및 상호 등을 들 수 있다.

6)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¹⁹⁾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 시기, 즉 공급시기를 말한다. 따라서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이후에 발급할 때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급 시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²⁰⁾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7일 경과 30일 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²²⁾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그 발급받은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²³⁾ 즉, 이런 경우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상거래 관행을 존중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자는 취지에서이다. 또 한 가지 예외적인 사항으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경우라도 다음²⁴⁾에 해당할 때는 그 발급하는 때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²⁵⁾

7)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²⁶⁾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

19) 한장석·김용관, “부가가치세 2011”, 1183면, (주)광교이텍스

20) 부가가치세법 제9조③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②

22) ①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②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ERP에 보관할 것

③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것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③, 조심 2009중 577, 2009.4.15

24) 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③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5)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호 ②

26) 이승룡, 2009년 6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17면

수증을 교부하여야 하지만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부가세법 제16조 제6항, 시행령 제57조②, 시행령79조의2 시행규칙 제17조).

①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사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재화(다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에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사업

⑥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의한 간주임대료

⑧ 일반과세자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제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²⁷⁾

27) 한장석·김용관, “부가가치세2011”, 1166면, (주)광교이텍스

8)세금계산서의 종류²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과세유형, 사업의 구분과 기재사항의 내용에 따라 협의의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교부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이 구분기재 되어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증빙 자료가 된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와 기재내용 및 기능이 동일하지만, 교부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세관장이 되는 것이다. 영수증은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중에서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고, 원칙적으로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세자료 및 거래영수증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9) 세금계산서 제출제도 연혁²⁹⁾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거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근거과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세청은 법 시행 초기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과 제출의 지도 및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크게 발달하고 인터넷 사용 인구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2년 4월부터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세무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도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다가 2010년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명세를 국세청 「e-세로」에 전송만 하면 되도록 바뀌어졌다. 물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기존의 제출방식을 병행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8) 이승룡, 2009년 6월,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면

29) 국세청, “국세청40년사”, 2006년, 920면

【표 2-2】 세금계산서 제출제도의 변천

기 간	제 출	전산실 송부(입력)	소비형
1977년 2기 이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매출·매입세금계산서	
1980년 2기 이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부 (10만 원 이상·미만 구분편철)	매출·매입세금계산서 (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일람표 ·전산테이프
1981년 2기 이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부 (30만 원 이상·미만 구분편철)	매출·매입세금계산서 (30만 원 이상)	
1988년 2기 이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부 (30만 원 이상·미만 구분편철)	매출세금계산서 (30만 원 이상)	
1991년 2기 이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전부 (30만 원 이상·미만 구분편철)	매출세금계산서 (30만 원 이상)	·전산디스켓 추가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 추가
1994년 2기 이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매출처별 거래명세표 폐지
1995년 1기 이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매출처별 세금 합계표	·세금계산서제출 일람표 폐지
2002년 2기 이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매출처별 세금 합계표	·홈택스서비스 온라인 제출
2009년 2기 이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전송, 기존방식	·국세청 전산망 온라인 제출
2010년 1기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명세서 국세청 「e-세로」 전송, 기존 방식 병행	전자세금계산서 「e-세 로」 자료 전송, 기존방식 병행	·국세청 「e-세로」 입력, 기존방식 병행

* 자료제공 :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년, 921면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배경³⁰⁾

2000년 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기업 간 거래의 복잡·다양화, 거래규모 증가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전자적 방식의 구

30) 장기용,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면, 2010, 경영컨설팅연구, 제10권 제3호, (사)한국경영컨설팅학회

매·조달시스템 도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의 필요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2001년 1월, 처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이때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의 예외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수수할 수 있도록 단순레이아웃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별도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전송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 종전의 전자세금계산서란 종지로 주고받게 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고받도록 구현한 거래방식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즉, 국세청 서버에 입력하는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종전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문서로 발행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e-mail로 송부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위변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출력하여 실물로 보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다시 개별 입력·제출하여야 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신고 및 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은 가공세금계산서 색출을 위한 상호대사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T/F활동 및 다양한 컨설팅과정을 거쳐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입법연혁³¹⁾ 및 관련 법령

정부는 2000년 12월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의 내용 중 전자신고·전자매체·전자계산·전자세금계산서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은 2001년 1월 29일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

31) 장기용,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면, 2010, 경영컨설팅연구, 제10권 제3호, (사)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01-4호)」를 발표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의 첫 발판을 던지게 된 것이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규정에서 2008년 12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행을 위한 세법개정과 제도마련을 위한 예산확보에 들어갔다. '09년 2월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파일과 전송방식을 정의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표준화위원회”를 발족, “표준화회의” 등을 거쳐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를 완료하였다. 2009년 11월에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방지, 작성자의 작성 부인 방지 및 「e-세로」 로그인 시 사업자의 개별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금융결제원 참여·시중은행(발급대행기관)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통 전에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봄으로써 시행초기 시스템 문제를 보완하고 최소화하여 제도의 시행을 위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였다. 비로소 2009년 12월 제도시행과 관련한 기본 정책이 마무리되고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에게 납세협력비용 절감, 정부에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 효과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 시행이 시작된 것이다.

2009년 12월에, 2010년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행하되(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관련가산세는 2011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부터 시행 후 2011년 개인복식부기의무자의 시행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도입초기, 제도 시행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중소기업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1년 늦추게 되었다.

2010년 12월, 시범운영 1년의 끝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특례규정 등 일부분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행 원년인 2010년에, 법인사업자의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발행 참여율을 높이고 발행방법 등 제도시행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의 본격적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시작되었고, 2012년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의무 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³²⁾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0년 1월1일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제22조<가산세>, 제32조 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이 일부 2010.12.27 부칙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조문은 제53조 의2<전자세금계산서>, 제54조①<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2010.12.30 부칙 개정, 제59조 ①<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등의 일부 조문이 2010.12.30 부칙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제60조④,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0.12.30 부칙> 또한 제83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2010.12.30 부칙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효과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취지 상 예상되는 효과는 크게 납세협력비용의 절감과 과세관청의 거래투명성 확보, 신고·납부의 편의성 제고, 그리고 디지털산업의 발전으로 기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던 세금계산서발행 중개사업자(ASP) 및 ERP 등 신산업 시장창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납세협력비용의 절감³³⁾

사업자는 과세사업을 운영하여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크면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성실납세의식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에서는 한국 조세연구원과 함께 2007년 납세협력비용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납세협력비용은 국내총생산(GDP) 901조원 대비 약

32)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2면, 2010년 12월

33)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자료“, 2009년

0.78%인 7조 140억원으로 이는 2007년 총 세수 153조원 대비 4.6% 수준이다. 납세자가 세금 1,000원을 납부하기 위해 약 46원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총 납세협력비용 7조 140억원중 법인사업자가 56.2%인 3조3천억원, 개인사업자가 43.8%인 3조705억원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법인 1,007만원 개인 80만원으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약 13배 이상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과 개인을 합한 납세의무자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165만원으로 나타났다.

납세협력비용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부가가치세 2조 2,189억원(32.6%), 법인세 1조 9,573억원(27.9%), 소득세 1조 8,416억원(26.3%)으로 나타났다. 발생부분별로는 증빙수치 및 기장, 신고 및 납부, 증빙발급 등 세 가지 항목에서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2007년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현황

구분	납세협력비용	비율
부가가치세	2조 2,189억	31.6%
법인세	1조 9,573억	27.9%
소득세	1조 8,416억	26.3%
기타	9,962억	14.2%

* 자료제공 :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자료”, 2009년 8월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이다. 국가 전체 세수 중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0.5%(2009년 기준)인데 비해 납세협력비용은 32%(2007년 기준)에 육박하려는 것을 볼 때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간 세금계산서 발행건수는 약 6억³⁴⁾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양식을 구매하여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한 후 방문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매출증빙이기 때문에 매출전표에 붙여 함께 보관하거나 별도의 파일로 보관하게 된다. 공급받는자 입

34) 박보근, “e-세금계산서 시대의 개막”, 3면, 2010년

장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매입증빙이기 때문에 비용전표에 붙이거나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이러한 발행 상 복잡한 절차가 생략되어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같음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신고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그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없어지게 되는데,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협력비용은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2-4】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납세협력비용 비교

구 분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양식	시스템구축비 또는 시스템사용 수수료	양식구매
인감날인	인증서발행비용	도장구매
전송	발행 건당 수수료발생	우편료 발생
편철 및 보관		바인더 및 보관장소 비용
부가가치세신고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

2) 거래투명성 확보 및 과세관청의 행정비용 절감³⁵⁾

과세관청은 위장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등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및 불법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색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실무에서 보면 과거 6개월 이전에 신고했던 사항을 과세관청이 소명요구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고 후 6월이 경과하다보면 이미 위장·가공 거래행위나, 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포착하는 것이 어려워지

35) 김지욱,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과세행정 정상화를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1-52면

게 된다. 사업자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고 자료 등을 검토할 세무공무원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신고 업무도 자율적 신고체제로 변환되면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허위 여부 등은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뀌어지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거래된 모든 내역이 공급시기(발급시기)에 바로바로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렵게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비용 절감 및 소명자료 업무의 처리비용 감소, 전자적 방식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제출 제도의 표준화로 전산입력 등 업무처리가 줄어들어 행정비용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본다.

3) 새로운 산업의 시장창출(ASP/ERP시스템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에 따라 대용량 연계사업자의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대용량 연계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중개해주고 수수료 수입을 사업목적으로 한 중개사업자(ASP) 수는 나날이 증가해서 2011년 3월 현재 146개에 달한다.³⁶⁾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난 2011년 3월 현재 코참빌, 더존비즈온 등과 같은 자체 구축한 대용량연계사업자 ERP를 포함하여 민간이 구축한 시스템사업자(ASP/ERP) 수는 314개에 달하고 있다.³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중개사업자인 ASP사업은 초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한번 구축된 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활성화되어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고, 사업자 수와 규모의 증가에 따라 발행건수가 증가하게 되면 ASP/ERP사업자 수도 더 늘어날 것이므로 또 하나의 새로운 산업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신고·납부의 편의성 제고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는 신고 시 제출서류로 신고서와 발행내

36) 국세청 「e-세로」 (www.e-sero.go.kr), "전자세금계산서제도 Q&A", "세금계산서 발행 3번"

37) 국세청 전자세원과 자료

역을 모두 기재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일일이 개별 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 「e-세로」에서 합계금액을 조회하여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범운동 및 본격 시행

2009년 세법개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2010년부터 법인사업 자를 대상으로 시범운동에 들어갔다. 이어서 2011년에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시범 운동 중에 있다. 시행 초기인 2010년, 제도도입에 대한 납세자의 인지도 부족과 중소기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의무 시행을 1년 뒤로 늦추면서 본격적으로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발급의무화하고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 발급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 절감, 과세관청엔 거래투명성 제고, 그 외 신산업 시장창출, 신고·납부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취지로 도입·운동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행원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실행경험을 통하여 살펴본 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동에 있어 운동상(제도적·법률적)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념

전자세금계산서란 법에 정한 공급시기에 다음의 전자적 방법³⁸⁾으로 발급³⁹⁾하

38) 전자적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②에 규정하는

* 표준인증 받은 ERP 및 ASP시스템을 통한 발행(1, 2호)

* 국세청 「e-세로」 및 ARS를 통한 발행(3호)

* 현금영수증장치를 통한 발행(4호)

39)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 주는 것(전달)을 말함

⇒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하고

⇒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달한다.

는 세금계산서⁴⁰⁾를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구축한 이중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ERP, ASP)간 세금계산서의 유통을 자유롭게 하고 검증방식의 일원화, 확장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하였다. 표준화대상으로는 항목 등 파일형식, 전자서명, 전송방식을 표준화 했고 이와 같은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생성시킬 수 있는 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정식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에는 승인번호(24자리)가 있는데 즉, 작성연월일(8자리의 숫자), 대용량연계사업자의 표준인증번호(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8자리 부여), 발행 일련번호(숫자와 영어 소문자로 구성된 8자리, 대용량연계사업자가 자체 부여)로 구성되어 있다.

(1)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그 차이를 비교해 볼 수가 있다.

【표 2-5】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 비교⁴¹⁾

구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형태	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	전자파일: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기발지침 v1.0」에 의해 생성되는 파일자체
인감날인	실제 인감도장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수신방법	직접 또는 우편수신	이메일로 수신
자료보관	종이형태로 보관	전자파일로 보관
형태자료	수동검색	조검검색 및 맞춤형검색
합계표 작성방법	개별명세 기재함	국세청 「e-세로」에 전송 분은 개별명세 기재안하고 합계금액만 기재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한 때, 내용확인 여부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전자 파일 자체가 이메일에 도달한 때, 수신확인 여부불문 이 때 우편(이메일)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한다.

40) 종이세금계산서는 부칙 제16조①의 별지11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자체'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파일자체'를 말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⁴²⁾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를 통한 발급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중개사업자 ASP, 대기업 등이 자체 구축한 ERP시스템을 통한 발급방법이 있으며, 이 외에도 인터넷 취약계층 등을 고려하여 ARS 발행 또는 VAN단말기 발행방법이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많은 대용량 연계대상사업자는 자체적으로 ERP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세금계산서발급 중개 사이트(ASP)에 가입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적은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갖출 필요 없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e-세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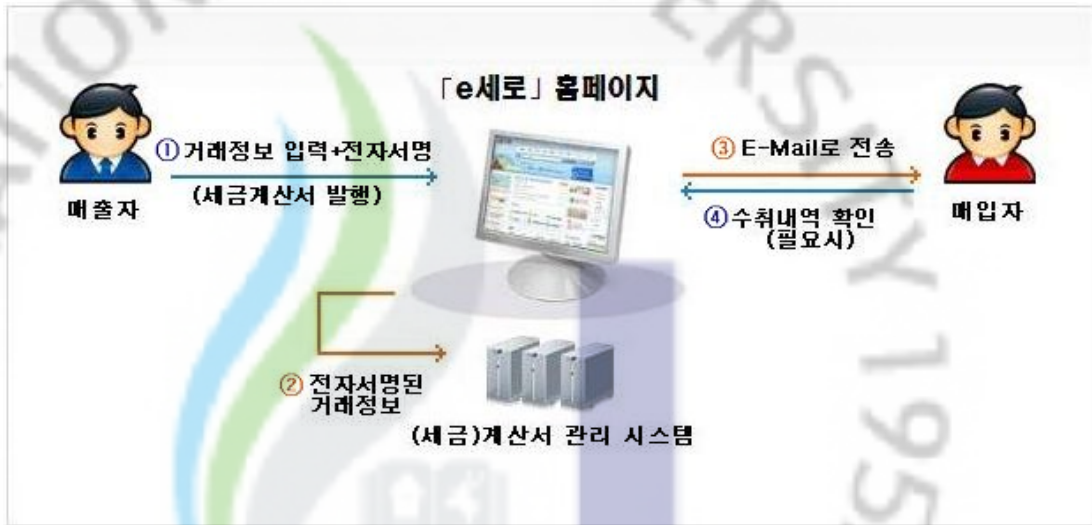
(1) 국세청 「e-세로」를 통한 발급

「e-세로」시스템은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국세청 홈페이지 「e-세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전자서명을 한 후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국세청 승인번호가 부여되며, 승인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e-mail로 전송된다. 공급받는 자의 e-mail 수신함에 도착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수신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발급이 완료된다.

이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ERP 또는 ASP 등의 대용량시스템을 구축,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인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발급과 동시에 바로 국세청 「e-세로」에 자동전송 된다.

41)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7면, 2010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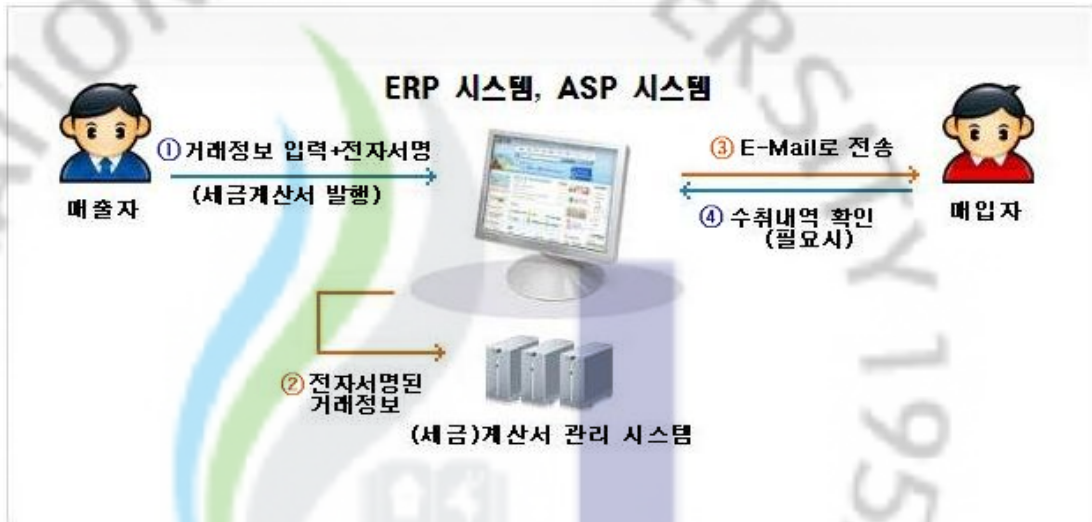
42)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참조



[자료출처 :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 자체구축(ERP) 또는 중개사업자(ASP)시스템을 통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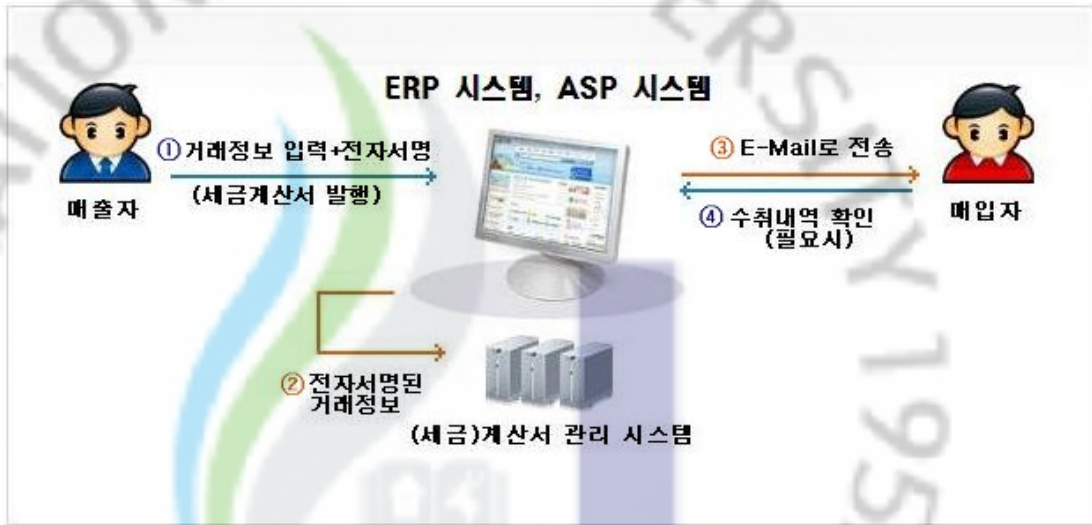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중개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ASP) 또는 대기업 등이 자체 구축한 ERP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중개사업자(ASP)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이 ASP(이 경우 건당 또는 월정액 수수료가 부담된다)시스템이다. 대기업 등이 자체 구축한 ERP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청 「e-세로」에 전송하는 방법이 ERP시스템이다. 이 경우 ERP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하는 대기업 등은 거래처로부터 발급받는 매입세금계산서도 ERP시스템을 통해 발급을 요구하고 있어, 자신의 매출세금계산서는 물론 매입세금계산서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한다. ERP시스템이나 ASP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사전에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에서 대용량연계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 전화 ARS를 통한 발급(보안카드 필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ARS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세미래 콜센터(☎126-내선3)를 통하여 발행하는 방법이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전화를 이용하여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거래정보가 국세청 「e-세로」에 전송되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공급자에게 발행확인 문자가 전송되고 이를 확인한 공급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ARS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은행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Phone Banking)과 같은 방식을 응용해서 만들어진다. 이 방법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자를 위해 고안된 것이다.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료 이외의 비용부담이 없어 경제적으로 사업자에게 납세비용부담이 적은 방법이지만 거래정보 입력이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한 번에 여러 건을 발행할 때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자료출처 :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제3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재화·용역의 거래 시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일반적 기준⁴³⁾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동산),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건물, 권리)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⁴⁴⁾이다.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조건부 거래)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이외에도 재화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⁴⁵⁾와 용역의 공급시기⁴⁶⁾기준이 있다.

(1) 재화의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부령 제21조)

1) 외상·할부판매⁴⁷⁾의 경우는 대가의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

43) 부가가치세법 제9조①

44)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재화를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공급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사용 개시

4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46) 부가가치세법 제9조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47) 할부판매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 지급, 재화인도일 다음 날로부터 최종 부분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

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2) 장기할부판매⁴⁸⁾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약정일)이다.

3) 반환·동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시용판매 및 검수판매가 있다.

4) 완성도기준지급⁴⁹⁾ 또는 중간지급조건부⁵⁰⁾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완성도지급기준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재화의 인도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때는 당해 잔금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다.

【표 2-6】 장기할부판매와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의 비교

구 분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
기본개념	인도 후 대금회수	인도전 대금회수
회수요건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3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기간요건	1년 이상	6개월 이상

5)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적용하되, 위탁자 또는 본인을 모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각각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적용한다.

48) 장기할부판매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 지급, 재화 인도일 다음날로부터 최종 후불금의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49) 완성도기준지급 : 개월에 관계없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드시 기성청구행위가 전체되어야 함.

50) 중간지급조건부 : 대가의 지급기간이 6개월 이상 및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 지급

* 지급날짜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2) 용역의 공급시기 기준(부법 제9조②, 부령 제22조)

- 1) 일반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
- 2)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또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 3)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 *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일반적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의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일자를 작성일자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발급은 불가능하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로 ‘후 세금계산서’라고도 하며 거래처별로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다.⁵¹⁾ 거래처별로 1억 원 이내에서 임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그 기간의 종료 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한다(부령 제54조①2). 또한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⁵²⁾할 수 있다. 선 발행 세금계산서 특례로 ‘선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기간 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발급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한다.⁵³⁾

* 제3호 조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또한 수정세금계산서와 연결도 가능하다.

5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①1

5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①3

* 제3호 조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하며 또한 수정세금계산서와 연결도 가능하다.

53) 부령 제54조②·③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발급 기한인 날이 휴일이라도 연장 안 됨)에 발급을 해야 가산세가 없으며,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매출·매입자 쌍방 공급가액의 1%)는 해당되나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은 세금계산서 발급일(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 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의 경우는 작성연월일)의 다음 달 15일 (전송기한이 휴일이면 연장)이내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동일하다. 예정·확정 신고 기한에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 전송시기가 매월 15일까지로 추가된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비교해 보면 【표 2-7】 과 같다.

【표 2-7】 부가가치세 유형별 특징 요약

구분	거래일(1.1일~1.31일)의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자	발급가능 기한	전송기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종이세금계산서	1.31일	2.10일	-	4.25일
전자세금계산서	1.31일	2.10일	2.15일	4.25일

4. 수정 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 및 전송기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의 환입, 공급가액의 변동,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경우 등 수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사유발생일 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금액(총액 또는 순액), 발급건수(1장 또는 2장), 수정신고·경정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정사유별 작성방법⁵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5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1) 환입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환입된 금액만을 (-)로 1장 발급한다.

2) 재화가 환입된 날을 포함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사유 발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한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가능하다.

(2)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1)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만을 (+)나 (-)로 기재하여 1장을 발급한다.

2) 세금계산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사유발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한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3)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1)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여 부(-)로 1장 발급한다.

2) 계약이 해제된 날을 포함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신고기간 경과 후 해제된 경우에는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필요하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 발행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3장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4)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1)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부(-)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2장)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때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예정신고분인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원칙이나 확정 신고에 반영이 가능하고, 일부만 개설된 경우 일부 금액 만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임의적 기재사항 포함)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1)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확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1매(총 2장)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유 발생 시 수정·경정청구 한다.

* 금액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는 착오 기재된 금액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하여 (-)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발급 시기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작성연월일 착오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당초부터 발급되어서는 안 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위장·가공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6)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신설>⁵⁵⁾

55)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61호, 2011. 4. 6>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⁵⁶⁾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발급할 있다⁵⁷⁾.

* 과세 분을 면세계산서로 발급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부가46015-2405, 94.11.28).

(2) 기재사항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1)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⁵⁸⁾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⁵⁹⁾

*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착오 발급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이 가능하다(제도46015-11102, 2001.5.15).

수정세금계산서 전송기한⁶⁰⁾에 대하여는 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과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공급가액 변동이나 재화의 환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전송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기재사항 착오,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일, 즉 실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과세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전송해야 한다.

56) 부가46015-334, 1994.2.21

57) 부가46015-2192, 1996.10.21

58) 채소비46015-380, 2000.12.26

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팁-1065, 2006.6.9

60)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20면, 2011.5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최대 가능기한

(1) 일반적인 경우(일반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못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급가능(단, 지연 발행 시 매출자와 매입자 쌍방 1% 가산세)하나 그 이후(미발급에 해당)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

(2)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1) 작성연월일을 사유발생일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환입, 공급가액 변동)인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의 최대 발급가능 기한과 동일하다.

2)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0일 이내까지 발급가능하고, 기재사항 착오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3) 계약해지인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한 해석은 없으나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기한과 동일하게 계약 해제 일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의 말일까지 발행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6.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⁶¹⁾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로서 예정고지 납부대상자의 경우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대상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고,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 개별명세

61)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46~48면, 2011.5.

서 작성 없이 합계만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 또는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의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합계표서식에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주의할 점으로 전자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일지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e-세로」에서 전송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전송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에 합계금액 등을 기재(개별명세는 기재하지 않음)하고, 미전송분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기재하고 매출·매입처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수동우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기재하고 매출·매입처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여부 확인은 「e-세로」(www.esero.go.kr) 또는 홈택스의 My NTS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하다.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요약

【표 2-8】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등 가산세

구분	근거법 령	신고서식 기입란	내용	가산세율	
				법인	개인
미발급	법제22조 ③ 1	(5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미 발급 또는 종이발급	'11년부터 2%	'12년부터 2%
지연 발급	법제22조 ② 1	(62)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 지나서 발급	1%	
지연 수취	부령 제70조의3 ⑥	(62)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수취	1%	
지연 전송	법제22조 ② 2의2	(60)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6일~과세기간 다음달 15일 까지 전송 예)1월 거래분을 2.16~7.15 일 까지 전송	'11년부터 0.1%	'12년부터 0.1%
미전송	법제22조 ② 2	(61)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달 15일까지 미 전송 예)1월 거래분을 7.15일까지 미 전송	'11년부터 0.3%	'12년부터 0.3%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⁶²⁾를 적용한다. 지연발행 가산세⁶³⁾는 매출자·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⁶⁴⁾ 미전송⁶⁵⁾·지연전송⁶⁶⁾ 가산세는 법인사업자가 2011년부터~2012년까지 지연전송 0.1%, 미전송 0.3%, 2013년부터는 지연전송 0.5%, 미전송 1%를 적용한다. 개인복식부기의무자는 2012~2013년까지 지연전송 0.1%, 미전송 0.3%, 2014년부터는 지연전송 0.5%, 미전송 1%를 적용한다. 거래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받은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자 가산세는 없다.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령 제60조 ② 4)에는 매출자는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가산세가 있고 매입자는 가산세 없고,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내지 47조의 5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령 제64조 ①)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가산세는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한다.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이점

손지영(2010)은 “부가가치세제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점에 관한 연구”에서 먼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도입효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서술하고 그에 대한 2010년 시행초기 수집된 부정적 효과로서의 문제점을 제도적 법률적 관점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제도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가능성, 나)우월적 지위에 있는 ERP구축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자기구축시스템 이용을 강요함으로써 인한 민간구축시스템 업체 간 마찰 가능성, 다)중소업체의 ASP시스템 이용수수료 부담과 ASP사업자의 폐업에 따른

62) 미발행이란 과세기간 말 다음 달 10일 이후 발행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경우

63) 지연발행이란 동일과세기간 내 공급시기를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경과하여 발행한 경우

64) 채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5) 미전송이란 과세기간 말 다음 달 16일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66) 지연전송이란 교부일(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발행일) 다음 달 16일 이후 전송

부담, 또 역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확인 등에 대한 부담 가중, 라)수신동의 없이 처리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 마)보안 전산오류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법률적 문제점으로 가)수기발행과 전자적 발행의 법 적용 형평성 문제, 나)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법 적용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이를테면 개인사업자는 2011년까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병행 발행할 수 있어 의무발행 부담이 없고,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발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 적용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손지영(2010)은 앞서 살펴본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ASP사업자의 수수료 등에 대한 담합 등, 수시 감시 체제의 구축과 설립기준에 대한 기준 마련, 나)장기적인 과세제도의 방향성과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장래의 도입효과성이 일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 재검증을 제시하였다. 다)다음으로 과도한 가산세 제도의 정비를 들고 있다. 손지영(2010)은 우리나라의 납세의식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라 성실납부의향 지수가 69%로 3명 중 2명 이상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과세제도 인프라 시스템의 발달, 그리고 성숙해가는 글로벌 세정환경에서 현재의 가산세 제도는 지나치게 과도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가산세 항목의 통합과 발생사유에 따른 가산세율의 차별적용, 단순착오 및 오류, 고의적 탈루를 목적으로 한 오류와는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라)민간구축시스템 사업자 간 마찰 등 해소를 위한 과세관청의 우선순위 결정 등 정책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마) 또한 e-세로 발행 시 수신 동의 후 처리, 바)전산보안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제도 시행시기를 일치하게 하여 법적용 형평성을 이루고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합계표 제출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의 전송기한을 일치시켜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을 현재 익월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법적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앞에 제시한 부분에 대한 적용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완전한 정착을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손지영(2010)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 번째, 「e-세로」 시스템의 대량발행 서버기능 개선,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의 기능 개선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세법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대금지급 시기에 대한 제제조치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대한 보완 규정을 법에 명기되어야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용(2010)은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연구에서 ASP시스템 사업자의 담합에 따른 정부의 수수료 등에 대한 공정거래 수시감시 체계 수립, 매입자지위 우월적 남용으로 인한 거래당사자간 마찰, e-세로 대량일괄발행시스템으로의 개선, 시스템사업자 등의 정보유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의 보안강화 등의 상시 정비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금액을 현재 건당 150원 내지 200원으로,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간이과세제도 폐지, 국세청 「e-세로」, ASP/ERP사업자 등의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여 회계프로그램에 자동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장기용(2010)은 여덟 번째로 제도의 조기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몽운동과 교육, 방송매체 등을 통한 홍보로 국민의 납세의식 전환을 위한 납세환경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정숙(2009)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연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e-메일 등록의 의무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혜택 금액 인상,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경감,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홍보활동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승룡(2009)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전자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의 논문에서 세금계산서 제도가 부가가치세제의 중요한 근간이 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는 부가가치세제의 완벽한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였고, 세금계산서제도의 개선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즉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세청 전산발급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정교한 상호분석을 통해 거래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위의 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발급시기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탈루 또는 소득 조작 목적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적

기에 발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승룡(2009)은 세금계산서 서식에 대한 규제 완화,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경감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유인, 접대비 및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거래상대방의 외형노출을 어렵게 하므로 이 또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 흐름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승룡(2009)은 또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초기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회계처리시스템과의 연동성 향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표, 즉 도입효과 중 납세협력비용 절감보다 거래행위의 투명성 확보(자료상 감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율이 70%에 불과한 데, 이들은 모두 전자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전자메일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을 강요하는 것은 힘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현금영수증 거래사실 확인신청 및 확인절차 등의 관련규정을 법령화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앞서의 선행연구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범운영하기 이전에 제도도입의 효과 측면에서 다양한 문헌연구와 연구자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다루고 있다. 유정숙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e-메일 등록의무화, 손지영은 장기적인 과세제도의 방향성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효과성이 일치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 재검증을 제안한 것이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다. 장기용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이승룡은 납세협력비용 절감보다는 거래행위 투명성 확보 면에서 제도의 보완을 제안하고 있고,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거래사실 확인신청의 절차와 같이 매입자거래사실 확인신청의 규정을 법령화 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특이하다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 차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시행원년 실제 시범운영 한 사업자의 운용효과를 중심으로 설문조사에 의해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많은 전문가 및 시범운영 사업체의 회계담당직원 등과 모니터링 하면서 얻은 결론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확산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초기 실제 운영한 사업자의 실행 경험상의 목소리를 넓게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

부의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납세자들에게 불편은 주지 않아야하고, 납세협력비용면에서도 비용이 절감되면 되었지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만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고 선량한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 면에서 기존에 보다 비용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면 이와 같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결국 쌍방 간, 즉 정부와 납세자 모두의 좋은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정부만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머무를 것이다.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운용한 현장의 목소리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거기서 개선점을 찾아 도입효과에 상충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효과와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문헌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운용한 사업체의 경험적 제안을 설문조사에 의하여 분석한 실증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제주도내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참여한 법인 및 2011년 1분기 발행에 참여한 개인사업자 중 분석을 위해 추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시행에 따라 시행초기 도입효과가 제대로 거두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시행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제주도내 시범 운용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운용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점을 찾고, 향후 개인사업자의 의무화에 앞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내 법인사업자 1,200개 업체, 개인사업자 150개 업체에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여 7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설문방법은 웹기반을 이용, e-메일로 실시하였다. 설문 회수율은 1,350개 업체 중 142개 업체가 회수되어 약 11%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회수비율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분석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설문조사 실시 전부터 기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담당자와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도입효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의견수렴 하였다. 더 심층적이고 현장감 있는 개선점을 연구하기 위해 세무전문가, 기업체의 발행방법에 따른 담당자 및 대표자, 세무공무원, 민간구축시스템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자, 회계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사전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지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회수된 설문 응답내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빈도분석과 홍보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효과성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순위를 빈도분석 하였다. 이것으로 2012년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발행참여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발행방법별 교차(빈도)분석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개선점을 추출하였다.

제2절 설문지구성 및 내용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연구자의 세무 업무 담당자로서 업무 수행 중에 기업체 실무담당자 등과 개별면접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설문구성내용을 다듬어 나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심층조사 후 추출해 낸 최종 설문지는 I 번~VI 번까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총 4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항목, 두 번째는 홍보교육면에서의 만족도 측정, 세 번째는 도입운동 효과, 네 번째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측정, 다섯 번째는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 여섯 번째는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배치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을 구하는 항목과 마지막 자유 의견개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3-1】 과 같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변수명	내용	항목수	
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10	
II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의 만족도	시행초기 시범운동 사업자의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에 대한 만족도	6	
III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 운동의 효과	제도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성	5	
IV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운영상 문제점	거래행위 투명성면	제도의 도입효과로써 거래행위 투명성 확보가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	5
		납세협력비용 절감면	제도의 도입효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이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	7
		시스템과 사업자 개별정보 보호	제도 운용에 따라 시스템 과부하 및 사업자개별정보 보호의 문제 파악	2
V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시범 운동사업자의 직접 경험한 문제점 파악·개선방안 순서	7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후 제주도내 사업자 중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시범 운용한 법인사업자 1,200업체 및 개인사업자 150업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 발행건수, 업종별, 매출액규모, 사업자 구분, 개업연한별로 위 【표 3-1】 설문지 구성에 대하여 어떤 응답을 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관련한 다양한 측정지표들을 개선방안과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하는 정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범운용상의 문제점을 찾기 위하여 10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에 대한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범 운용한 【표 3-1】의 제주도내 사업자에 대하여 제도 안내 및 홍보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6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측정 지표들은 향후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앞서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3.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운용의 효과성

본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운용의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는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 신고·납부의 편의성, 업무의 양, 그리고 전반적인 효과성으로 나누어 만족도를 측정하는 정도로 구성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운용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5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4.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본 연구에서는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찾기 위한 설문문항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업무 수행 중에 제주도내 기업체 회계담당자 등과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업체 발행실무자, 지역 내 세무관련 전문가, 민간구축ASP/ERP시스템 프로그래머 관련자, 회사경영자, 대학교수, 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세무서실무자 등을 구성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문항 구성에 있어 실무적 법률적 입장에서 다양한 계층의 실무 운용자들의 심층면접(Deeps Interview)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항목들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본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은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문제점)”와 “거래투명성 확보에 대한 효과(문제점)”, 시스템 과부하 문제, 사업자개별정보 보호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행방법, 발행건수, 업종, 매출액규모, 사업자구분, 사업연한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구하는 정도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14개 문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5.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방안으로 시범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정도와 향후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시행에 앞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각의 정의에 따른 결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개 문항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제3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과 회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제주도내 전자세금계산서 시범 운용한 사업자의 e-메일 주소를 수집한 후, 웹기반을 통한 이메일공법으로 설문지를 송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설문기간은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6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동 기간 동안 총 1,350부의 설문을 발송하여 총 142부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142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현황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현황

배부된 설문지(A)	회수된 설문지			설문지회수 율 (B/A)	유효회수율 (C/B)
	계(B)	분석가능(C)	분석제외		
1,350부	142부	142부	0부	11%	100%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SAS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측정지표들에 대한 비도분석을 이용하여 제시된 변수들 간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을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실증분석의 내용과 분석방법

구분	분석내용	분석방법
기초분석	· 표본의 구성	빈도분석
	·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심층면접 실시 실무자 등 개별면접 실시
	· 변수 및 개념간의 교차분석	교차분석

국세청 「e-세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ASP/ERP : 민간구축(중개수수료)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응답자의 특성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국세청 「e-세로」	94 (66.2%)
	ASP	38 (26.8%)
	ERP	9 (6.3%)
	세무서대리발행	1 (0.7%)
사용 시스템 개수(ASP/ERP)	1개	43 (70.5%)
	2~3개	18 (29.5%)
사용 시스템 사용수수료(ASP/ERP)	10,000원 미만	37 (64.9%)
	10,000~35,000원 미만	10 (17.5%)
	35,000~50,000원 미만	4 (7.0%)
	50,000~100,000원 미만	3 (5.3%)
	100,000원 이상	3 (5.3%)
사업자 유형	법인사업자	101 (71.1%)
	개인사업자	41 (28.9%)
사업년수	3년 미만	20 (14.1%)
	3~5년 미만	12 (8.5%)
	5~10년 미만	43 (30.3%)
	10~20년 미만	45 (31.7%)
	20년 이상	22 (15.5%)
업종	제조업	21 (14.8%)
	건설업	38 (26.8%)
	도소매업	28 (19.7%)
	운수업	4 (2.8%)
	음식숙박업	5 (3.5%)
	금융보험업	1 (0.7%)
	전문직	22 (15.5%)
	부동산	3 (2.1%)
	기타	20 (14.1%)

2010년 총 매출액	5억 미만	56 (39.4%)
	5~10억 미만	25 (17.6%)
	10~50억 미만	37 (26.1%)
	50~100억 미만	13 (9.2%)
	100억 이상	11 (7.8%)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발행건수	10건 미만	57 (40.1%)
	10~50건 미만	45 (31.7%)
	50~150건 미만	23 (16.2%)
	150~300건 미만	8 (5.6%)
	300건 이상	9 (6.3%)
응답자 직책	대표자	36 (25.4%)
	회계담당	94 (66.2%)
	영업담당	4 (2.8%)
	기타	8 (5.6%)

응답자 중 발행방법별 분포는 국세청 「e-세로」 사용자가 94명(66.9%)으로 가장 많았고, ASP/ERP시스템 사용자가 47명(33.1%), 기타 1명(0.7%)의 순서로 나타났다. ASP/ERP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자(응답자 142명 중 61명 사용)가 사용 시스템 개수 분포는 1개 사용이 43명(70.5%), 2~3개 사용이 18명(29.5%)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SP/ERP시스템 사용자(응답자 142명 중 57명의 응답자의 사용수수료 비용 분포)가 월별 발행금액별 분포는 1만원 미만이 37명(64.8%), 1만원-35,000원 미만이 10명(17.6%), 35,000원 이상이 10명(17.6%)의 순서로 나타났다. 발행사업자의 구분별 분포는 법인사업자가 101(71.1%), 개인사업자 41명(28.9%)으로 나타났고, 사업기간별 분포는 3년 미만이 20명(14.1%), 3-5년 미만 12명(8.5%), 5-10년 미만 43명(30.3%), 10-20년 미만이 45명(31.7%), 20년 이상이 22명(15.4%)의 순서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이 21명(14.8%), 건설업이 38명(26.8%), 도매업이 28명(19.7%), 전문직 22명(15.5%), 운수업이 4명(2.8%), 음식숙박업이 5명(3.5%),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기타 24명(16.9)로 나타났고, 사업규모별 분포는 5억 미만이 56명(39.4%), 5-10억 미만이 25명(17.6%), 10-50억 미만이 37명(26.1%), 50-100억 미만이 13명(9.2%), 100억 이상이 11명(7.8%)의 순서로 나타났다. 발행건수별 분포는 10건 미만 57명(40.1%), 10-50건 미만 45명(31.7%), 50-150건 미만 23명(16.2%), 150-300건 미만이 8명(5.6%), 300건 이상이 9명(6.3%)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응답자 직책은 대표자 응답이 36명

(25.4%), 회계담당이 94명(66.2%), 영업담당 및 기타 8명(5.6%)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발행방법별 특성에 있어 제주지역의 사업자는 대체로 국세청 「e-세로」 사용자가 66.2%로 가장 많고, 나머지 ASP/ERP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있어서도 사용개수가 1개 사용이 70.5%를 차지하고 있고, 월별 시스템 사용료 또한 35,000원 미만이 82.4%를 차지하고 있다. 월별 발행건수별 분포도 10건 미만이 40.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사업연수로는 10~20년 미만 사이 사업자가 31.7%,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및 건설업이 46.5%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5억 미만이 39.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운용효과 분석

1.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에 관한 만족도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표 4-3】 과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이 충분하였다”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한 값이 30.3%로 나타난 것은 홍보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표 4-1】 의 2011년 개인사업자 참여 값인 29%를 차지하고 있어서이다.

【표 4-2】 홍보교육

지난 해(2010년) 홍보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분	빈도	
예	96	(67.6%)
아니오	46	(32.4%)
합계	142	(100%)
어떤 방식으로 들었습니까? <홍보교육방법> 모두 골라주세요.		
구분	빈도	
발송안내문	19	(19.8%)

e-세로	6	(6.3%)
과세관청 집합교육	10	(10.4%)
간담회	2	(2.1%)
방송등 대중매체	4	(4.2%)
세무대리인	5	(5.2%)
기타	50	(52.1%)
합계	96	(100%)

좋다고 생각하는 홍보방법을 모두 골라주세요.

구분	단일선택	복수선택	빈도
발송안내문	18	49	67
e-세로	6	42	48
과세관청 집합교육	18	39	57
간담회	5	18	23
방송등 대중매체	4	21	25
세무대리인	7	28	35
기타	0	1	0
합계	58	198	255

【표 4-3】 홍보교육의 만족도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이 충분하였다	43(30.3%)	61(43.1%)	38(26.6%)	142 (100%)
도입취지 등 전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15(10.5%)	58(40.9%)	69(48.6%)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40(28.2%)	61(43.0%)	41(28.8%)	
전반적 만족도 평가	30(21.1%)	75(52.8%)	37(26.1%)	

2. 제도도입의 운용효과에 관한 만족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운용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4】와 같이 나타났다.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거래의 투명성 제고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납부 편의성 향

상되었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업무량이 양적으로 줄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운용의 효과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납세협력비용 절감	53(37.3%)	53(37.3%)	36(25.4%)	142 (100%)
거래의 투명성 제고	18(12.7%)	45(31.7%)	79(55.6%)	
신고·납부 편의성 향상	38(26.7%)	44(31.0%)	60(42.2%)	
업무량 감소	63(44.4%)	38(26.8%)	41(28.9%)	
전반적 효과성 평가	40(28.2%)	54(38.0%)	48(33.8%)	

3. 운용상 문제점에 관한 분석

(1) 거래투명성과 「발급시기」 적용 착오와의 관계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공급시기(발행시기) 적용착오로 인한 지연발행/지연전송/미발행/미전송 우려가 있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3.2%로 나타나고 있어 「발급시기」의 적용 착오의 문제, 즉 「발급시기」의 표준화에 대한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효과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거래투명성과 “ASP/ERP시스템 「매입자승인」 후 전송”의 관계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매입자승인」 후 전송으로 인한 지연전송/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22.0%로 나

타나고 있어 “ASP/ERP시스템 「매입자승인」 후 전송”의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미미함을 알 수 있다.

(3) 거래투명성과 “ASP/ERP시스템 전송 전 「취소·수정·삭제」 등 가능”의 관계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전송 전 「취소·수정·삭제」 등 가능하므로 마감시한 압박전송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지연전송·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26.6%로 나타나고 있어 “ASP/ERP시스템의 전송 전 「취소·수정·삭제」 등 가능”의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미미함을 알 수 있다.

(4) 거래투명성과 “ASP/ERP시스템 전송기한(익월15일)여유”의 관계

「ASP/ERP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국세청 「e-세로」에 비해 전송기한(익월15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27.3%로 나타나고 있어 “ASP/ERP시스템 전송기한(익월15일)여유”의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미미함을 알 수 있다.

(5) 거래투명성과 “ASP/ERP시스템 「취소·수정·삭제」자유로움”의 관계

「ASP/ERP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국세청 「e-세로」에 비해 「취소·수정·삭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1.2%로 나타나고 있어 “ASP/ERP시스템 「취소·수정·삭제」자유로움”의 문제가 거래의 투명성 효과에 영향을 있음을 알 수 있다.

(6)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e-세로」시스템 대량일괄발행 안 돼”의 관계

「「e-세로」시스템은 대량일괄발행이 안되므로 ASP/ERP시스템(민간구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38.0%로 나타나고 있어 “「e-세로」시스템 대량일괄발행 안 돼”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e-세로」시스템은 수정·삭제가 안 돼”의 관계

「「e-세로」시스템은 수정·삭제가 안되므로 ASP/ERP시스템(민간구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5.6%로 나타나고 있어 “「e-세로」시스템 대량일괄발행 안 돼”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매입자발급시스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강요”의 관계

「매입자발급시스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강요로 ASP/ERP시스템 이용·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29.1%로 나타나고 있어 “매입자발급시스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강요”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대체적으로 미미함을 알 수 있다.

(9)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e-세로」시스템 발행 후 「수정·삭제」안 돼”의 관계

「「e-세로」시스템은 발행 후 「수정·삭제」가 안 되므로 수정신고 증가 및 수

정처리 소명 등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8.7%로 나타나고 있어 “「e-세로」시스템 발행 후 「수정·삭제」안 돼”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ASP시스템이용 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안 돼”의 관계

「ASP시스템 이용·발행 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므로 「e-세로」조회 후 다운 입력하는 이중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8.3%로 나타나고 있어 “ASP시스템 이용 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안 돼”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전자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관계

「전자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 협력비용이 가중된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59.1%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 출력 병행”의 관계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 출력을 병행하고 있어, 이중비용이 소요된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58.2%로 나타나고 있어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 출력 병행”의 문제가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시스템 과부하와 “전송마감 시한 임박 일시대량전송”의 관계

「전송마감 시한 임박 일시대량전송 등은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서버다운이 우려된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7.3%로 나타나고 있어 “전송마감시한 임박 일시 대량전송”의 문제가 시스템 과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사업자개별정보 보호와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사업자의 신뢰성”의 관계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업자 개별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이 나타났다. 값은 “해당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35.1%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사업자의 안정성 및 신뢰성”의 크기가 사업자 개별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심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운용상의 문제점 중 전자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 협력비용이 가중된다는 것과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 출력을 병행하고 있어, 이중비용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 운용상의 문제점

구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해당없음	총합계
거래투명성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공급시기(발행시기) 적용착오로 인한 지연발행/지연전송/미발행/미전송 우려가 있다.	18 (22.2%)	28 (34.6%)	35 (43.2%)	81 (100%)	61	142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매입자승인」 후 전송으로 인한 지연전송/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	30 (39.0%)	30 (39.0%)	17 (22.0%)	77 (100%)	65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전송 전 「취소 수정 삭제」 등 가능하므로 마감시한 임박전송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지연전송·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	29 (36.7%)	29 (36.7%)	21 (26.6%)	79 (100%)	63	
ASP/ERP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국세청 「e-세로」에 비해 전송기한(익월15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29 (37.7%)	27 (35.0%)	21 (27.3%)	77 (100%)	65	
ASP/ERP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국세청 「e-세로」에 비해 「취소·수정·삭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28.8%)	24 (30.0%)	33 (41.2%)	80 (100%)	62	

납세협력비용절감 효과

「e-세로」시스템은 대량일괄발행이 안되므로 ASP/ERP시스템(민간구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32 (34.8%)	25 (27.2%)	35 (38.0%)	92 (100%)	50	
「e-세로」시스템은 수정·삭제가 안되므로 ASP/ERP시스템(민간구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25 (27.2%)	25 (27.2%)	42 (45.6%)	92 (100%)	50	
매입자발급시스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강요로 ASP/ERP시스템 이용·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	30 (38.0%)	26 (32.9%)	23 (29.1%)	79 (100%)	63	
「e-세로」시스템은 발행 후 「수정·삭제」가 안되므로 수정신고증가 및 수정처리소명 등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23 (20.7%)	34 (30.6%)	54 (48.7%)	111 (100%)	31	142
ASP시스템 이용·발행 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안되므로 「e-세로」 조회 후 다운 입력하는 이중업무 처리를 해야한다.	22 (25.3%)	23 (26.4%)	42 (48.3%)	87 (100%)	55	
전자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 협력비용이 가중된다.	23 (20.9%)	22 (20%)	65 (59.1%)	110 (100%)	32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 출력을 병행하고 있어, 이중비용이 소요된다.	27 (22.1%)	24 (19.7%)	71 (58.2%)	122 (100%)	20	

시스템과부하 문제

전송마감시한 임박 일시 대량전송 등은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서버다운이 우려된다.	24 (21.4%)	35 (31.3%)	53 (47.3%)	112 (100%)	30	142
--	---------------	---------------	---------------	---------------	----	-----

사업자개별정보 보호 효과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업자 개별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14 (14.4%)	49 (50.5%)	34 (35.1%)	97 (100%)	45	142
--	---------------	---------------	---------------	--------------	----	-----

4. 운용상 문제점에 관한 특성별 교차분석

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발행방법별, 발행건수별, 업종별, 매출액규모별 특성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특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발행방법별 외의 기타의 특성별 항목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거래의 투명성 효과에 대한 발행방법별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또한 아래 【표 4-6】 과 같이 특성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대하여 발행방법별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표 4-7】 과 같이 나타났다.

(1) 거래투명성 효과에 대한 특성별 교차분석

【표 4-6】 거래투명성 효과

①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공급시기(발행시기) 적용착오로 인한 지연발행/지연전송/미발행/미전송 우려가 있다.							
특성별 (카이제곱확률)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해당 없음	총 합계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4(4.9%)	14(17.3%)	17(21.0%)	35(43.2%)	59	94
	ASP/ERP	14(17.3%)	13(16.1%)	18(22.2%)	45(55.6%)	2	47
	세무서대리발행	0(0.0%)	1(1.2%)	0(0.0%)	1(1.2%)	0	1
합계		18(22.2%)	28(34.6%)	35(43.2%)	81(100%)	61	142
②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매입사승인」 후 전송으로 인한 지연전송/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11(14.3%)	15(19.5%)	9(11.6%)	35(45.5%)	59	94
	ASP/ERP	19(24.7%)	14(18.2%)	8(10.4%)	41(53.2%)	6	47
	세무서대리발행	0(0.0%)	1(1.3%)	0(0.0%)	1(1.3%)	0	1
합계		30(39.0%)	30(39.0%)	17(22.0)	77(100%)	65	142
③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전송 전 「취소 수정 삭제」 등 가능하므로 마감시한 임박전송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지연전송·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9(11.4%)	16(20.2%)	10(12.7%)	35(44.3%)	59	94
	ASP/ERP	20(25.3%)	12(15.2%)	11(13.9%)	43(54.4%)	4	47
	세무서대리발행	0(0.0%)	1(1.3%)	0(0.0%)	1(1.3%)	0	1
합계		29(36.7%)	29(36.7%)	21(26.6%)	79(100%)	63	142

④ ASP/ERP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국세청 「e-세로」에 비해 전송기한(익월15일%)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5(6.5%)	17(22.0%)	10(13%)	32(41.6%)	62	94
	ASP/ERP	24(31.2%)	10(13.0%)	10(13%)	44(57.1%)	3	47
	세무서대리발행	0(0.0%)	0(0.0%)	1(1.3%)	1(1.3%)	0	1
합계		29(37.7%)	27(35.0%)	21(27.3%)	77(100%)	65	142

⑤ ASP/ERP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국세청 「e-세로」에 비해 「취소·수정·삭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4(5.0%)	11(13.8%)	20(25.0%)	35(43.8%)	59	94
	ASP/ERP	19(23.8%)	13(16.2%)	12(15%)	44(55%)	3	47
	세무서대리발행	0(0.0%)	0(0.0%)	1(1.2%)	1(1.2%)	0	1
합계		23(28.8%)	24(30.0%)	33(41.2%)	80(100%)	62	142

(2) 납세협력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특성별 교차분석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대하여 발행방법별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7】 과 같이 나타났다. 국세청 「e-세로」 시스템과 ASP/ERP시스템 특성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세무서대리발행 특성에 대한 응답은 1%로 미미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e-세로」시스템은 대량일괄발행이 안되므로 ASP/ERP시스템(민간구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를 분석한 결과 【표 4-7】 과 같이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38.0% 중에 ASP/ERP이용자가 응답한 값이 21.7%로 이는 「e-세로」시스템이 대량일괄발행이 안되므로 인해서 ASP/ERP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시스템 이용수수료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e-세로」시스템은 수정·삭제가 안 되므로 ASP/ERP시스템(민간구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를 분석한 결과 【표 4-7】 과 같이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5.6% 중에 「e-세로」시스템 주로 이용자가 응답한 값이 23.9%로 나타났다. 이는 「e-세로」시스템 주로 이용자가 수정·삭제가 안 되므로 인해서 ASP/ERP 이용을 하게 되는 사항으로 시스템 이용수수료 비용부담이 가

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매입자발급시스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강요로 ASP/ERP시스템 이용·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를 분석한 결과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값이 38%로 나타났다. 이 중에 ASP/ERP시스템 이용자가 응답한 값이 2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제주지역은 「매입자발급시스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강요 현상이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e-세로」시스템은 발행 후 「수정·삭제」가 안 되므로 수정신고 증가 및 수정처리 소명 등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를 분석한 결과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8.7%로 이 중 「e-세로」시스템이용자가 3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세청 「e-세로」시스템이용자가 「수정·삭제」가 안 되므로 인해서 수정처리, 소명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ASP시스템 이용·발행 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므로 「e-세로」조회 후 다운 입력하는 이중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를 분석한 결과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48.3% 중에 「e-세로」시스템 이용자가 응답한 값이 28.7%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청 「e-세로」시스템 이용자가 회계프로그램과 연동이 안 되므로 인해서 국세청 「e-세로」를 이용하며 회계프로그램을 별도의운용 해야 하는 이중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전자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 협력비용이 가중된다.」를 분석한 결과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그렇다”로 응답한 값이 59.1%로 이 중에 국세청 「e-세로」이용자가 응답한 값이 40.0%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청 「e-세로」이용자가 규모가 작거나 전자업무 처리능력 부족으로 세무대리인 협력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 출력을 병행하고 있어, 이중비용이 소요된다.」를 분석한 결과 【표 4-7】과 같이 나타났다. “그렇다”로 응답한 값이 58.2%로 이 중에 국세청 「e-세로」시스템 이용자가 응답한 값이 38.5%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청 「e-세로」시스템 이용자가 역시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 출력을 병행하는 이중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e-세로」시스템을 대량일괄 개선하거나 수정·삭제 처리의 문제에 있어 ASP/ERP시스템 이용사업자와 같이 전송기한 규정을 같게 하여 범리적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국세청 「e-세로」시스템이 대량일괄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발급시기 및 전송시기의 표준화 등 제도의 정상화 또는 안정화가 될 때까지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의 규정을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제도시행 초기 제도(납세)순응에 대한 비용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반을 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7】 납세협력비용절감 효과

① 「e-세로」시스템은 대량일괄발행이 안되므로 ASP/ERP시스템(민간구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특성별 (카이제곱확률)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해당 없음	총 합계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18(19.6%)	14(15.2%)	14(15.2%)	46(50.0%)	48	94
	ASP/ERP	14(15.2%)	11(12%)	20(21.7%)	45(48.9%)	2	47
	세무서대리발행	0(0.0%)	0(0.0%)	1(1.1%)	1(1.1%)	0	1
	합계	32(34.8%)	25(27.2%)	35(38.0%)	92(100%)	50	142
② 「e-세로」시스템은 수정·삭제가 안되므로 ASP/ERP시스템(민간구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13(14.1%)	11(12.0%)	22(23.9%)	46(50.0%)	48	94
	ASP/ERP	12(13.1%)	14(15.2%)	19(20.6%)	45(48.9%)	2	47
	세무서대리발행	0(0.0%)	0(0.0%)	1(1.1%)	1(1.1%)	0	1
	합계	25(27.2%)	25(27.2%)	42(45.6%)	92(100%)	50	142
③ 매입자발급시스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강요로 ASP/ERP시스템 이용·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7(8.9%)	18(22.8%)	11(13.9%)	36(45.6%)	58	94
	ASP/ERP	22(27.9%)	8(10.1%)	12(15.2%)	42(53.2%)	5	47
	세무서대리발행	1(1.2%)	0(0.0%)	0(0.0%)	1(1.2%)	0	1
	합계	30(38.0%)	26(32.9%)	23(29.1%)	79(100%)	63	142
④ 「e-세로」시스템은 발행 후 「수정·삭제」가 안되므로 수정신고증가 및 수정처리소명 등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10(9%)	18(16.2%)	38(34.3%)	66(59.5%)	28	94
	ASP/ERP	13(11.7%)	16(14.4%)	15(13.5%)	44(39.6%)	3	47
	세무서대리발행	0(0.0%)	0(0.0%)	1(0.9%)	1(0.9%)	0	1
	합계	23(20.7%)	34(30.6%)	54(48.7%)	111(100%)	31	142

⑤ ASP시스템 이용·발행 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안되므로 「e-세로」 조회 후 다
운 입력하는 이중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5(5.8%)	12(13.8%)	25(28.7%)	42(48.3%)	52	94
	ASP/ERP	16(18.4%)	11(12.6%)	17(19.6%)	44(50.6%)	3	47
	세무서대리발행	1(1.1%)	0(0.0%)	0(0.0%)	1(1.1%)	0	1
	합계	22(25.3%)	23(26.4%)	42(48.3%)	87(100%)	55	142

⑥ 전자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 협력비용이 가중된다.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14(12.7%)	7(6.4%)	44(40.0%)	65(59.1%)	29	94
	ASP/ERP	9(8.2%)	14(12.7%)	21(19.1%)	44(40.0%)	3	47
	세무서대리발행	0(0.0%)	1(0.9%)	0(0.0%)	1(0.9%)	0	1
	합계	23(20.9%)	22(20.0%)	65(59.1%)	110(100%)	32	142

⑦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 출력을 병행하고 있어, 이중비용이 소요된다.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15(12.3%)	14(11.5%)	47(38.5%)	76(62.3%)	18	94
	ASP/ERP	12(9.8%)	9(7.4%)	24(19.7%)	45(36.9%)	2	47
	세무서대리발행	0(0.0%)	1(0.8%)	0(0.0%)	1(0.8%)	0	1
	합계	27(22.1%)	24(19.7%)	71(58.2%)	122(100%)	20	142

(3) 시스템 및 사업자 개별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특성별 교차분석

1) 「전송마감시한 임박 일시 대량전송 등은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서버다
운이 우려된다.」를 분석한 결과 【표 4-8】 과 같이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응
답한 값이 47.3%로 국세청 「e-세로」 이용자 및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이
용사업자 모두 전송마감시한 임박 일시 대량전송 등으로 전산시스템 과부하 및 서
버다운 현상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업자 중에
「국세청 「e-세로」 이용자가 응답한 값이 2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세청 「e-세로」 이용자가 마감시한 임박 전송 시 서버다운에 대한 우려 값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시스템과부하 문제

전송마감시한 임박 일시 대량전송 등은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서버다운이 우려 된다.							
특성별 (카이제곱확률)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해당 없음	총 합계
발행 방법	국세청 「e-세로」	10(8.9%)	22(19.7%)	32(28.6%)	64(57.2%)	30	94
	ASP/ERP	14(12.5%)	12(10.7%)	21(18.7%)	47(41.9%)	0	47

(0.00)	세무서대리발행	0(0.0%)	1(0.9%)	0(0.0%)	1(0.9%)	0	1
	합계	24(21.4%)	35(31.3%)	53(47.3%)	112(100%)	30	142

2)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업자 개별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를 분석한 결과 【표 4-9】와 같이 나타났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값이 35.1%로 국세청 「e-세로」이용자 및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이용 사업자 모두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사업자에 제공된 사업자 개별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사업자개별정보 보호 효과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업자 개별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성별 (카이제곱확률)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합계	해당 없음	총 합계
발행 방법 (0.00)	국세청 「e-세로」	4(4.1%)	27(27.8%)	19(19.6%)	50(51.5%)	44	94
	ASP/ERP	10(10.3%)	22(22.7%)	14(14.5%)	46(47.5%)	1	47
	세무서대리발행	0(0.0%)	0(0.0%)	1(1.0%)	1(1.0%)	0	1
	합계	14(14.4%)	49(50.5%)	34(35.1%)	97(100%)	45	142

(4) 특성별 통계적 유의 차이 분석

【표 4-10】에서 살펴보듯이 표본 특성별 차이에서 이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표본의 특성별 세부항목에 따라 결과치가 대체적으로 미미한 기대 빈도를 가지므로 카이제곱 검정이 올바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표 4-10】 특성별 통계적 유의 차이 항목

표본특성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
발행방법별	거래투명성: ① ② ③ ④ ⑤ 납세협력비용절감효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스템과부하문제, 사업자개별정보 보호 효과
업종별	거래투명성: ④ 납세협력비용절감효과: ①
매출액별	거래투명성: ① ② ③ ④ ⑤ 납세협력비용절감효과: ① ② ③ ④ ⑤ ⑥ 시스템과부하문제, 사업자개별정보 보호 효과
발행건수별	거래투명성: ① ③ ④ ⑤ 납세협력비용절감효과: ① ② ④ ⑥ 시스템과부하문제, 사업자개별정보 보호 효과

5.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분석해 본 결과 【표 4-11】 과 같이 나타났다. 「발급 시기」 규정의 표준화에 대한 개선이 가장 우선순위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발급세액공제의 개선”의 순서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국세청 e-세로의 대량일괄발행시스템 개선”, 네 번째로 “간단하고 알기 쉬운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배포”, 다섯 번째로 “발행시스템(ASP/ERP)간의 전산매뉴얼의 표준화 또는 일원화”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로 “법령요약본 제작 배포”, 마지막으로 “복권당첨제 실시”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표 4-11】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합	순위
대량일괄발행시스템 개선	646	3
「발급 시기」 규정을 표준화	709	1
발급세액공제 개선	705	2
법령요약본 제작 배포	559	6

발급시스템(ASP/ERP)간의 전산매뉴얼 표준화 또는 일원화	586	5
“간단하고 알기 쉬운 사용자매뉴얼” 제작 배포	642	4
복권 당첨 제 실시	354	7

※우선순위 합은 순위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1순위는 7점, 2순위는 6점, 3순위는 5점, 4순위는 4점, 5순위는 3점, 6순위는 2점, 7순위는 1점)하여 합산한 수

위 【표 4-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응답자 중 가장 큰 값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발급 시기」의 표준화”이다. 이와 같이 발급시기의 표준화 요구가 1순위라는 결과 값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는 발행시스템 간 발급시기와 전송시기의 차이가 납세자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큰 값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발급세액 공제의 대폭 개선”이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제주지역의 사업자가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이고 대부분 국세청 「e-세로」를 사용(66.2%)하며 ASP/ERP 시스템 사용자의 경우 사용개수가 1개를 사용(70.5%)한다는 분포가 많고 월별 이용수수료(82.4%) 또한 소액임에도, 제도(납세) 순응에 따른 인건비 및 전산시스템 장치마련 등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제도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는 미미하고 비용부담은 매우 크다는 결과를 시사하고 있다.

제3절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세부내용 분석결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보교육 및 전반적인 도입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행초기 1년 동안의 시범운용 결과 제도의 도입 예상 효과 중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과 나타난 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거래행위투명성, 납세협력비용절감, 시스템 과부하, 사업자개별정보 보호 등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1) 「발급시기」의 표준화 미비 및 「발급시기」의 정의규정 부재 67)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이용 시 발급시기와 전송시기 등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어 계속사업자들이 사업에 몰두하다보면 전송시기를 놓치는 수가 있다. 공급시기(발급시기) 판단 착오 등으로 지연발행, 지연전송, 미발행, 미전송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보통이다”를 포함하여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발급시기」의 표준화 미비 및 「발급시기」의 정의규정 부재가 사업자의 제도시행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으며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률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사항으로 「발급시기」의 표준화 또는 「발급시기」의 정의규정이 요구되어진다.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이용사업자가 매입자승인 후 세금계산서를 전송함으로 지연전송, 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보통이다”를 포함하여 대체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결과 값이 나타났다. 매입자승인 후 전송여부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 효과에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이용사업자가 작성 후 전송하기 전에 수정·삭제·취소가 가능함에 따라 마감시한 임박전송 및 지연전송 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보통이다”를 포함하여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는 결과 값이 나타났다. 이는 잘 못 발행할 수도 있다는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발행 후 「확정·전송」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심리적 이월성이 내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발행시기와 전송시기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취지가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있고, 국세청 「e-세로」가 구축된 만큼 ASP/ERP시스템 이용 사업자가 전송기한(익월10일) 여유로 인하여 국세청 「e-세로」보다 ASP/ERP시스템 이용을 주로 한다고 볼 때, 발행시스템에 따른 「발급시기」의 차이가 법리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급시스템 간에 「발급시기」규정을 표준화하여 발행방법에 따른 발급

67) 심층면접과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하여 직접수집, 2011, 4월

시기의 차별 적용을 해소하고 법리적 형평성을 실현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확충·도모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민간구축(ASP/ERP)시스템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국세청 「e-세로」에 비해 수정·삭제·취소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한 결과 값은 “보통이다”를 포함하여 대체로 “그러하다”고 응답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 「e-세로」는 입력과 동시에 전송을 해야 발급이 완료되고,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사업자는 수신자 e-메일에 송달하면 발급된 것이고 국세청 「e-세로」에 전송은 다음달 15일 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발행방법 간 법리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발급시기와 전송시기를 표준화하거나 발급시스템 간 「발급시기」 규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거래의 투명성 효과는 제고 될 것이다.

시범 운용한 사업자의 「발급시기」의 표준화 부재 및 「발급시기」의 정의 규정 부재와 관련한 응답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중 국세청 「e-세로」는 대량일괄발행이 안되므로 인하여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대용량연계사업자인 ASP 또는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ASP 또는 ERP시스템 이용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 「발급시기」⁶⁸⁾ 문제가 「e-세로」와 달라, 간혹 공급시기(발급시기)적용 착오로 지연발급/지연전송/미발급/미전송 할 우려가 있다. 즉 「발급·전송시기」의 표준화 미비로 인한 거래투명성 제고효과가 잠식된다 할 수 있다.

대규모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매출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해놓고 매입자 이메일 수신함에 송신한 다음 국세청 「e-세로」에 전송함에 있어 전송 마감 기한인 익월15일까지 기다리다 마감기한 또는 그 직전에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송 전 거래 내용의 취소·수정·삭제 등 처리가 용이하므로 마감시한 압박하여 전송할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이 발행방법에 따라 「발급 시기」 및 전송시기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인해 마감시기 전산 과부하 또는 시스템 마비사태 또는 수신자 이메일 함 주

68) 「e-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국세청 「e-세로」에 입력된 때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공급받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0. 2. 18>

소 오류로 매입자승인 확인이 안 됨으로 인하여 착오로 미전송 되거나 지연 전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모든 발행방법(채널)에 대하여 '발급 시기'에 대한 표준화 즉 '발급 시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한 거래 양자 간에 거래질서의 혼란 및 거래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잠식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8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 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국세청 e-세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ASP 또는 ERP시스템 이용사업자는 앞서와 같이 매입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한 때에 발행이 완료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후 전송의 문제에 있어 상거래질서를 해칠 목적이 있는 공급자 또는 자료상 등 공급자가 고의로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출 과세표준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고, 자료상 추적시기를 놓쳐 제도도입 효과가 잠식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일련의 자료상 등과 점 조직된 매입자는 수신된 전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통한 부당환급 수령 후 먹튀가 용이하게 된다.

앞의 【표 4-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발급시기」의 표준화가 “1순위” 값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도 발행 시스템 간 발급시기와 전송시기의 차이가 납세자에게 혼란과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발급세액공제의 대폭 개선보다도 더 큰 값의 결과가 나타난 점에 대하여 연구자도 많은 놀라움을 가졌다.

(2) 「e-세로」 대량일괄발급시스템 미비 등 납세협력비용 부담가중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와 「e-세로」대량일괄발행 시스템 미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제주지역 사업자가 대부분 국세청 「e-세로」를 사용함에도 비용 절감효과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시행초기 시스템 설치, 전자업무처리 능력 부족에 따른 세무대리인 협력비용, 자체 인건비 부담 등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이전에 각 기업체 회계담당자와 개별면접을 통해, 또 세무대리인, 대용량 연계시스템 프로그램 관련자 등과 심층면접을 통해서 문제점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도입효과와 상반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범 운용한 사업자의 응답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구축시스템(ASP/ERP) 주로 이용사업자는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이 대량일괄발행이 안 되므로 인해서 민간구축(ASP/ERP)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해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이용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이 수정·삭제가 안 되는 이유로 민간구축시스템(ASP/ERP)을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e-세로」시스템 주로 이용사업자는 「수정·삭제」가 안 되므로 수정신고 및 수정처리 소명 등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ASP/ERP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므로 「e-세로」조회 후 다운 입력하는 이중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 「e-세로」시스템 주로 이용사업자는 ASP/ERP시스템과 회계프로그램간의 연동이 안 되는 이유로 국세청 「e-세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며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용해야 하는 이중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자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 협력비용의 가중, 국세청 「e-세로」 이용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도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 출력을 병행하는 이중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 「e-세로」시스템이 대용량 서버 구축이 안 된 점, 국세청 「e-세로」가 수정·삭제가 안 된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민간구축시스템(ASP/ERP) 이용수수료 부담이 많아지고 인건비 등 납세협력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입자발급시스템 강요로 인한 민간구축시스템(ASP/ERP) 이용은 제주도 사업체의 규모와 성격상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제주지역 사업자가 국세청 「e-세로」를 이용함에도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자 또는 고령의 사업자 등은 시스템 구축을 물론이거니와 인터넷환경에 대한 적응능

력이 부족하여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권한도 없을뿐더러 조회 권한 또한 수입동의 후라야 가능하다보니 세무에 관한한 모두 세무대리인이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세납세자 등이 떠밀어 준 관련업무 처리로 납세 협력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시행초기 대량 발생하는 오류 등 전반적인 관련 업무에 대해 소명이 요구될 때 수입 세무대리인에 협조를 구하고 있어 세무대리인 업무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의 【표 4-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전체응답자 중 두 번째로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급세액 공제의 대폭 개선”이라는 점은 제주지역의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규모의 사업자이고 국세청 「e-세로」사용(66.2%)을 주로하고 ASP/ERP 시스템 사용자의 경우 사용개수가 1개 70.5%, 월별 이용수수료 또한 35,000원 미만이 82.4%임에도 제도(납세) 순응에 따른 인건비 및 전산시스템 장치 마련 등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제도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하고 비용부담은 매우 크다는 것, 즉 도입효과로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서버다운

앞의 분석결과 “「발급시기」 적용혼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전송시간 마감 일자에 임박해서 전송하는 문제가 많고, 마감시한 임박 대량전송은 전산시스템 과부하 또는 서버다운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발급시기 또는 전송시기를 표준화 하거나 국세청 「e-세로」시스템을 대용량시스템으로 조기에 구축하는 일이 요구되어진다.

(4) 사업자 개별정보와 민간구축시스템(ASP/ERP)사업자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관계

앞의 분석결과 “민간구축시스템(ASP/ERP)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업자 개별정

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에 대한 응답이 대체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쪽으로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에 있어 발급 시 기재 내용에는 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경쟁사 및 다른 누군가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결국 국세청 서버에 모두 모아지는데 국세청 서버가 해킹을 당할 경우, 혹은 ASP사업자나 ERP 구축자가 해킹을 당하거나 과산 폐업 등 문을 닫을 경우, 사업자의 개별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히 민간구축시스템(ASP/ERP) 사업자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발급 시기」 규정의 표준화에 대한 개선이 가장 우선순위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발급세액공제의 개선”이 두 번째, “국세청 e-세로의 대량일괄발행시스템 개선”이 세 번째 순위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로 “간단하고 알기 쉬운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배포”, 다섯 번째로 “발행시스템(ASP/ERP)간의 전산매뉴얼의 표준화 또는 일원화”의 순서로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선택은 7개의 설문문항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은 각 표본의 선택된 순위에 가중치를 부여한(1순위 7점, 2순위 6점, 3순위 5점, 4순위 4점, 5순위 3점, 6순위 2점, 7순위 1점) 숫자를 합하여 분석하였다.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결과 발급시기의 표준화 또는 발급시기 정의의 규정에 대한 개선요구가 발급세액의공제의 대폭 개선 및 복권당첨제 실시의 개선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본 연구자도 크게 놀랐다.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근거과세 제도를 통한 공평과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통한 납세자 만족도 제고, 납세에 대한 순응도 및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과세관청의 노력의 결과로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의무발행을 시작했고,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2년부터 의무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운용 초기인 2010년, 홍보 및 시스템구축, 제도도입에 따른 납세자 이해도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운용한 결과, 도입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납세협력비용은 절감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거래의 투명성은 운용초기 1년 정도의 시범운용만으로는 통계적 성과치가 측정될 수 없으나 시범운용 사업자의 운용상 느끼는 투명성 제고 효과는 보통 정도 이상의 결과 값이 측정되었다. 이는 일부 사업자의 부정적인 선입견일 수도 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실질적으로 당월의 범위내로 당겨짐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진다고 판단하는 사업자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신고·납부의 효율성 면에서는 편의성 제고와 업무량 감소 면에서는 업무량이 더 늘어났다는 약간의 부정적 결과 값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많은 전문가 및 시범운용 사업체의 회계담당직원 등과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면서 얻은 결론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즉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납세자가 서로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i)거래의 투명성은 확고히 제고하고, ii)납세협력비용은 절감되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경우에 정

부와 납세자 양쪽의 입장에서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뒤따라야 하는 바, 즉 정부의 입장에서 유익한 점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신고의 편의성을 통한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 각각의 상호 관계에서 상생효과(win, win)를 위하여 도입 되어야 그 제도가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도입효과 면에서 기존의 제도일 때보다 상호 입장에서 더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의 투명성 확보 효과는 실현되고 납세자의 비용절감 효과는 기존 종이세금계산서 때보다 훨씬 더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제도에서보다 효과와 비용 절감이 더 나아지든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기존의 제도보다 비용부담 정도가 더 크다는 분석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i)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e-세로」를 대량일괄발행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발급시기」의 표준화 및 「발급시기」의 정의를 규정한 연후에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일반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2013년 예정된 전 개인사업자 발행의무화에 앞서 충분한 제도 홍보와 사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때의 자료상 등 색출에 6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조기에 색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i)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납세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도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발급세액공제의 규정은 존치 이유가 무색할 정도로 무의미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운용한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과 비교 해볼 때, “건당 200원, 한도 100만원”은 속된 표현으로 “애들 껌 값 정도”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제주도내 사업자 중에 월 발행건수가 50건 미만의 기업체가 71.8%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납세협력비용 즉, 인터넷환경 설치 및 고급인력 확보, 공인인증 비용, 발급시스템 이용비용 등과 비교할 때 건당 200원이라는 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다. 예를 들어 월 15건 발행 시 15×200 원은 3,000원이 된다. 거래의 투명성 확보 효과로 숨은 세원이 양성화되고 자료상 등의 조기색출로 세원이 증가할 때 국세청 입장에서의 성과는 제고된다.

쌍 방의 상생(Win Win)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 성과의 배분(나눔과 배려)으로 선량한 중소기업체의 납세협력비용을 상쇄하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규정을 대폭 상향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세청 「e-세로」가 대용량 서버구축이 이루어져야 민간구축시스템 이용 사업자의 이용수수료 부담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iii) 업무의 양적 감소를 위해서 또한 국세청 「e-세로」의 대용량 서버가 구축되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로 종이세금계산서 병행출력 업무가 줄고 발급방법간의 발급시기와 전송시기의 표준화를 이루어 거래 상호간 혼돈을 축소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구축시스템사업자(ASP/ERP)간 전산매뉴얼을 표준화 하여 민간구축시스템(ASP/ERP)이용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iv) 또한 개인복식부기의무자 시행에 앞서 “간단한 사용자매뉴얼” 및 “발급 시기 규정 등 요약집”을 제작하여 전 사업자에게 배포하는 등 제도이해의 준비와 운용 전, 실행에 대한 경계심이 축소되도록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가 일부 지역(제주도)에 국한한 시범 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 사업자의 균형 있는 결과의 측정치라 볼 수는 없고, 또 제도의 도입·운용 1년차, 운용효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거래의 투명성 등의 효과 면에서는 그 수치가 측정될 수 없는 시기이므로 그 효과 측정에 있어 신뢰성이 만족할 바는 못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숨은 세원 발굴과 자료상 등 조기색출을 이루어내어 부가가치세의 세원의 양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곧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일조하게 된다. 반면에 납세자에게는 제도의 확산과 참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규정의 대폭 개정을 통하여 혜택을 부여한다면, 정부와 납세자가 서로 상생(원원 win win)하는 공정사회 구현의 길로 한 걸음 더 진일보 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연구 결과의 시사점

부가가치세제상 새로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법률적으로 확고한 시스템(국세청 e-세로)장치 마련과 납세자의 새로운 제도적응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도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과적 운용을 위해 시행초기 시범 운용한 납세자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한 본 논문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적 시사점

(1) 발행시스템 간 「발급시기」의 표준화 또는 「발급시기」의 정의 규정

전자세금계산서라 함은 법에 정한 공급시기에 다음의 전자적 방법⁶⁹⁾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민간구축(ASP/ERP) 이중 세금계산서시스템 간 세금계산서 유통을 자유롭게 하고 검증방식의 일원화, 확장성 확보를 위해 표준화하였다.

표준화 대상으로는 항목 등 파일형식, 전자서명, 전송방식을 표준화했고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생성시킬 수 있는 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정식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있다.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종이세금계산서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에 의해 거래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우편물 등이 거래상대방에 도달한 때(내용확인 여부 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전자파일 자체가 이메일에 도달한 때(수신확인여부 불문)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69)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②에 규정하는

*표준인증을 받은 ERP, ASP시스템을 통한 발행(1, 2호)

*국세청 「e-세로」 및 ARS를 통한 발행(3호)

*현금영수증장치를 통한 발행(4호)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계산서 자체가 실체가 있으므로 상대방에 넘겨주는 것을 발급이라 하고 이때를 발행 또는 발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라 함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파일자체”를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 “파일자체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에 입력 될 때” 발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도 마찬가지로 거래상대방에게 우편송달 하거나 방문 송달 하는 등 전달(도달 또는 발급) 자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용확인 여부 불문이 성립될 수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자체가 거래상대방의 이메일에 수신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수신확인 여부 불문하고 도달 또는 전달, 그리고 발급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70) 「민법」이나 「행정법」에서 정의하는 도달의 법리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함에,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 또는 약속(세금계산서 수수)으로 발급하고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가 수신자의 약속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전자적 파일자체로 이메일 함에 도달했다는 것만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전자적 발급이란 수신자가 문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놓일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민법 규정에 의거 “파일자체가 객관적 상황에 있는 때”라 함은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 입력 된 때”로 볼 수 있으므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규정을 ☞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2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세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 위 밑줄로 표시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를 삭제하고,

☞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 「e-세로」 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

70)*민법이나 행정법 상 도달(수신)의 정의 → <“수신자가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개봉여부 불문)에 있는 경우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다.

된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로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개정이 이루어질 때 국세청 「e-세로」와 민간구축(ASP/ERP) 시스템의 발급방법 간 「발급시기」의 표준화 또는 「발급시기」의 정의가 규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이용사업자의 발급시기와 전송시기의 적용(판단)혼란이 사라지고 거래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월 함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규정을 월별 일정주기 단위, 즉 1일-10일까지 공급 분을 20일까지, 11-20일까지 공급 분을 30일까지, 21-말일까지 공급 분을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월말 또는 익월 10일 경에 몰리지 않도록 제도개선한 연 후에 점차적으로 계몽활동을 통하여 발급시기(전송시기)의 마감기한 집중 현상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발급방법간의 발급시기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재화·용역의 공급자(매출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공급시기<발급시기>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세로)에 입력됨으로써 자료상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색출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재화·용역을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거래내용이 실시간으로 국세청 「e-세로」에 자동 집계되어 상시 조회가 가능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별도의 집계가 불필요하고 신고 이후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발생소지가 거의 없어 한 차원 높은 신뢰세정 기반이 구축되어질 것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신고상황 및 성실도 분석업무 등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게 되므로 자료상 색출 및 부당 매입세액공제 후 먹튀 할 개연성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발급시기」에 대한 발급방법 간 표준화 또는 「발급시기」의 정의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입취지로서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거래투명성 확보 효과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의 개정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은 근거과세 기반으로 확고하게 구축된 세금계산서 제도가 전자적 발행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면서 구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다.

제주지역 시범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국세청 「e-세로」 이용을 주로 함에도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전자업무 처리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가 고 부가가치 인력 비용 부담이 많다는 결과가 된다. 세부적으로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e-세로」 시스템이 대량일괄발행 서버 구축이 안 되었다는 점, 한 번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되어 수정·삭제·취소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민간구축(ASP/ERP) 시스템 이용수수료 부담이 많아지고 인건비 등 납세협력비용 증가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행초기 제도(납세) 순응에 따른 비용과 제도 운용에 대한 비용 증가가 따르므로 납세자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규정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 시행 후, 납세자에게는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불편한 제도이고, 과세관청 입장에서 거래의 투명성 확보 효과가 제고되는 등 불균형적인 제도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와 납세자가 서로 상생(윈윈 win win)효과를 이끌어내어 공정사회 구현의 취지에 맞도록 법령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건당 200원, 한도 100만원”은 납세자가 본 제도를 운용하고 제도시행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기위해 처리되는 비용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금액이다.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의 개선”이 「발급시기」의 표준화 다음인 2순위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영세규모의 사업자 등의 발급세액공제의 개선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확산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증가가 완화 될 때까지라도 아래의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규정을 ☞와 같이 개정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긍정적 납세 순응으로 이

어지도록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의5제2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현행[발급세액공제 건당 200원, 한도 100만원]

☞ [발급세액의 1%, 한도 500만원]

2. 제도적·정책적 시사점

(1) 국세청 「e-세로」 대량일괄 발행시스템 개선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은 2010년 이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근거과세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다. 현재 우리나라 세금계산서제도가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의 대용량 서버 구축이 미비된 상태에서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운용되다보니 여러 가지 운용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실제 운용한 제주지역 내 사업자들을 상대로 운용상 문제점을 개별면접,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 실시한 결과 응답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이 대량일괄 발행이 안 되고 수정·삭제가 자유롭지 않으므로 인하여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이용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 응답이 많았고, 또 “국세청 「e-세로」가 대용량설계 미 구축 등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발행의무화 대상, 비대상의 구분 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신뢰성 저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보관용 종이세금계산서를 병행 출력하는 이중 납세협력비용이 소모된다.”고 하였다.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이용·발행하는 사업자가 전송마감 시기에 맞춰 전송할 때, 국세청 「e-세로」 시스템 과부하 또는 서버다운 현상이 크게 우려된다고 하는 응답이 많았다.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이용·발행하는 사업자가 마감전송 임박시기에 맞춰 전송할 때, 업무 과부하 또는 시스템 과부하 등 사유로 지연전송·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세청 「e-세로」 시스템 대용량 서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운용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용량 서버가 구축 되어야 「발급시기」에 대한 정의 규정의 개정, 즉 발행시스템 간 「발급시기」 표준화를 통하여 매 공급시기마다 실시간으로 발급내역에 대한 「e-세로」 입력이 가능하게 되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민간구축시스템 이용 사업자의 이용수수료 부담 등이 해소되어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효과로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의 절감효과를 이루어 공평과세 기반 형성을 위해서

☞ 국세청 「e-세로」 시스템의 대용량 서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간단하고 알기 쉬운 사용자매뉴얼”제작 홍보

2012년부터 개인 복식 부기의무자의 의무발급이 시작된다. 이에 앞서 이들에 대한 사전 제도안내 및 발급참여에 대한 홍보 업무가 급선무이다. 설문조사와 개별면접 등으로 수집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자는 다른 개선요구 사항보다 “간단하고 알기 쉬운 사용자매뉴얼”을 제작하여 홍보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나타났다. 2013년부터 전 개인사업자에게 확대될 것을 대비하여 서라도 “간단하고 알기 쉬운 사용자매뉴얼” 제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연말정산 안내> 책자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안내책자로서 “간단하고 알기 쉬운 사용자매뉴얼”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와 같은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상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개인사업자 발행의무화가 시작 될 때 제도에 대한 홍보 및 납세자 이해 부족으로 우려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 “간단하고 알기 쉬운 사용자매뉴얼”을 대량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3) “민간구축(ASP/ERP)시스템 간 전산매뉴얼 표준화 또는 일원화”

민간구축(ASP/ERP)시스템 이용 사업자들이 한결같이 어떤 시스템은 화면구성이 이렇고, 어떤 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전송일자를 지정해두는 등, 민간구축시스템 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발급·전송까지의 일련의 절차 상 화면구성과 입력매뉴얼이 조금씩 다르다는 사용자들의 불편·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 민간구축(ASP/ERP)시스템 간 전산매뉴얼의 표준화 또는 일원화하여야 한다.

(4) 국세청 「e-세로」, 당일 또는 2~3일 내 수정기한 규정 등 자유의견 개선 사항

이 외에도 제주도내 시범운용 사업자의 운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자유의견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e-세로」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 회사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오류로 인하여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출처의 오류로 인한 세금계산서 수정처리가 매입처의 수정처리로도 연결되어 불편하다. 당일 또는 2~3일 내의 수정기한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실수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또는 삭제하려고 할 때, 수정 등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증거로 종이세금계산서를 프리트 해야 한다.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을 메일로 발송 할 때, 제목기재, 거래내역서 등의 파일첨부, 입금계좌번호기재 항목추가 등 발급화면 상 기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국세청 「e-세로」의 발행 및 수신내역 조회기간 1개월은 짧은 감이 있다. 그 이상의 기간, 예를 들어 분기 또는 반기, 또는 1년 등 조회기간을 확장하여야 한다.

4) 건설업인 경우 과세와 면세 분 공급이 같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 이 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병행되는데 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발급하고 계산서는 수기로 작성해서 직접 교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계산서 또한 전자적 발급

이 가능하도록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하여야 한다.

5) 탈세의도 또는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지연발급 가산세 1%는 과중한 편이다.

6) 수입업체가 전산미숙으로 국세청 「e-세로」 가입이 불가피할 때, 세무대리인이 좀 더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의서 제출 후 조회가능하나 이 또한 수입업체 대표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동의서를 접수해야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다.

7) 국세청 「e-세로」 사용을 꺼리는 이유가 수정 삭제 등이 안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운용해 본 결과, 거래 상대방의 요청으로 날짜, 품목 등을 수정하거나 혹은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 「e-세로」 이용 시 수정·삭제·취소 등 처리가 안 되므로 타 발행방법을 이용하는 이용수수료 부담, 수정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하여야하는 복잡성, 건건이 소명처리와 증거서류 보관 등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가 매우 비효율적이다. 민간구축 시스템 이용발급 시에는 이메일 발송 후 거래상대방이 승인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취소·수정·삭제가 가능한 만큼 국세청 「e-세로」에서도 발급시기의 한도 내에서 당일 또는 2~3일 내에 수정·삭제·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8) 국세청 「e-세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난 후 거래상대방 이메일 수신여부 확인 기능이 추가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발급 후 유선으로 이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9) 면세 분 계산서의 경우도 전자적 발급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10) 국세청 「e-세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 여백에 메일 주소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의 서식에 e-메일 주소란을 넣을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서식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국세청 「e-세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행(입력)일자 이전(과거)일자 발급은 가능한데, 후(미래)일자 발급도 가능하게 하여, 세금계산서의 기능 중 청구서의 기능으로서의 청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12) 공급자의 입장에서 국세청 「e-세로」를 이용한 일방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이 실무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와의 거래승인 등의 절차가 있는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세청 「e-세로」

가 수신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로 전자과일 자체를 송부하면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서이다.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거래처와 공사대금 및 재화의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조정과정에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때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발행일자 또는 금액 정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내용 또는 금액정정의 수정세금계산서 제출기한을 현재 다음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확장하였으면 한다.

14) 국세청 「e-세로」 이용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기재사항 오류입력 등으로 반송하여야 하거나, 공급자 연락처를 찾아 재발행 요청해야 할 때가 있다. 매입자 이메일에 수신된 오류전자세금계산서에 반송기능 및 공급자 연락처(전화번호)란의 추가 표기가 필요하다.

15) 현재 거래처(매입자)가 이용하는 중개사업자(ASP/ERP)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중개사업자별로 이용수수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단일시스템을 통해 모든 거래내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이용이 편리한 공동시스템 구축(e-세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6) e-세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단순한 오류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없이 수정·삭제가 가능케 함으로써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하는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

17) 99%이상 외상매출을 하고 있는 제조업에 있어, (회수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외상매출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자금 부담에 대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래일자를 발급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면 한다.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인 익월 10일이 휴일, 공휴일, 토요일에 해당될 때,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주 5일 근무제로 휴일, 공휴일, 토요일 등에 은행, 관공서, 일반 업체 등도 휴일로 지정된다. 따라서 세금납부, 공과금 등 마감일 자동연장 되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자동연장 되어야 한다.

19)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취급할 직원 사용

이 곤란하다. 2013년 전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이 시작되는데 미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일정한 발급사이트를 지정 또는 개인사업자용 사용자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하여 제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전혀 모르는 직원들도 매뉴얼 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의 시급하다.

20)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당초의 e-메일 주소가 계속 남아 있다. 최근 새로운 e-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발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새로운 e-메일 주소로 변경되어지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e-메일 주소 칸을 추가하는 서식변경을 하고 e-메일 주소 변경 시 방문 또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회사대표가 늘 한 장소에서 거래행위를 성사시킬 수는 없다. 이동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자 할 때 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에서 e-메일 주소정정 신청(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하여야 한다.

2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래의 투명성 확보, 즉 거래의 양성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는 인건비 상승, 장비마련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정부의 수입으로 반영된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바꾸어서 정부의 수입이 늘어난다고 할 때 그것은 영세한 서민사업자가 고스란히 꺼안은 비용과의 개연성이 있고, 기존의 탈세를 자초한 위장사업자 등은 제도가 바뀌나 안 바뀌나 별 상관없이 허위거래 행위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 국민(납세자)의 입장에서 주어질 혜택을 먼저 고려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신고에 따른 발급세액공제의 상향조정, 성실신고에 따른 보상 등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아니면 납세자 또는 발급대행업체, 누구를 위한 제도의 도입인지 납세자가 얻는 혜택은 무엇인지 제도운용 후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최소한 당일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행정이나 법의 적용에도 예외가 있듯이 당일 자 발급분에 대해서 취소 또

는 정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에서 납세자 편의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의견 제안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면세 분 계산서도 전자적 발행을 원하고 있고, 국세청 「e-세로」 발급 후 당일 또는 2~3일 내의 수정기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꼭 실행되어야 하고, 국세청 「e-세로」 발급 수신 시 반송기능, 공급자의 연락처 기재 기능 등 추가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메일 발송 시 제목기재, 거래내역서 파일첨부, 입금계좌번호 기재 칸 설정 등 기능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후 첫 시범 운용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문조사 기법으로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 제주지역 사업자만을 표본으로 설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제주지역 사업자의 특성상 대기업이 별로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 또는 영세규모의 사업자로, 국세청 e-세로 사용이 66.2%를 차지하고 있다. ASP/ERP 시스템 이용사업자가 33.1% 수준으로, 이 중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1개의 ASP/ERP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다. 월별 시스템이용수수료 또한 대부분 30,000원 미만에 분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세청 e-세로의 대용량 시스템으로의 개선 등의 면에서는 다소 측정변수 추출 등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일부 특정지역 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그 결과에 일정부분 한계점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보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회계담당자나 대표자로 한정하다보니 마침, 설문조사 기간이 과세관청, 납세자 모두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설문지 회수비율이 다소 부진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의견개진에 있어 객관성 또는 대표성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고, 본 연구의 결과가 제주지역 또는 전국의 모든 납세자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셋째,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구성, 심층면접 후 설문항목을 만들었으나, 제주지역 업종별 분포가 다양하지 않음으로 일부 업종의 실무자, 회계사, ASP/ERP시스템 프로그램 관련자,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세무서 실무자 등 최소의 인원구성으로 설문항목을 검토하였다. 물론 저자가 현장 실무상 업무 중에 납세자와의 개별면접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수렴하였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문제점 검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직접 운용한 사업자의 운용상 효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직접 모니터링 한 최초의 시도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계점은 있으나, 향후의 연구에서 타 수도권 지역 등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연구범위를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되는데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하여 문헌연구, 탐색적 연구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선 행 논문

손지영(2010). “부가가치세제상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점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지욱(2009).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과세행정 정상화를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전공 석사학위논문

유정숙(2009).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회계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승룡(2009).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전자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회계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성환(2005).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소고(허위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학사학위논문

민소영(2010). “부가가치세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박운미(2001). “세금계산서 수수정상화를 통한 근거과세 확대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충희(2010). “자료상 규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양성화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학과 세무관리 전공 석사학위논문

조덕규(200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현황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면

2. 학술지

장기용(2010).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영컨설팅연구 제10권 제3호, (사)한국경영컨설팅학회

고윤성 · 이윤자(2010).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허욱(2009).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른 세무업무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계간세무 봄호, 한국세무사회

최광 · 이우택(1988). “부가가치세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소

3. 단행본

한장석 · 김용관. 2011년 부가가치세2011. 光教

김봉근. 2005년 부가가치세 해설. (주)영화조세통람사

국세청 박병완(2011). 실무상과세쟁점 및 사례중심 부가가치세 실무. 세연 T&A

강경태(2009). 세법개론. 지혜의 샘

4. 국세청 발간자료 및 웹자료, 비 논문

박보근(2010). “e-세금계산서 시대 개막”, 월간 해양한국, Vol.2010 No.1

국세청(2011.5), (2010.1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국세청자료(2011). “한 눈에 보는 국세통계”

국세청자료(20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Q&A”

국세청(2009).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발표자료”

국세청(2011). 「e-세로」홈페이지 자료

텍스넷(세무법규 및 해설). “<http://www.taxnet.co.kr>”

국세청자료(20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해(핵심Q&A)”

김용락(2005.12).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자료상 근절방안”

국세청자료(2006). “국세청40년사”

프레시안 경제뉴스 자료(2009-09-17). “세수 100원당 납세협력비용, 징세비용의 6.5배”, “납세협력비용 일부, 정부가 보전해줘야”, 세무사회

아시아 경제기사(2009-09-17). “정부 징세비용 줄이다 납세자 부담커져”, 세무사회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선점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2010년 이후 선 시행한 제주도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실지 운용 효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으로 의견개진하고,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참여를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건승과 귀 사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년 5월

지도교수 : 정 순 여(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연구자 : 이 영 숙(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 본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제주세무서 이영숙(전화 064-720-5301, 휴대폰 010-4595-52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채널에 대한 설명입니다.)

「e-세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www.esero.go.kr)	국 세 청
A S 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중개사업자
E R P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자 체 구 축
A R S	세무서발급 ARS보안카드로 세미래콜센터(☎126-내선3) (Automatic Response System, 자동응답시스템)	국 세 청
세무서 대리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	시 행 전

I. 다음은 귀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또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와 관련된 분이 응답해 주십시오.)

1. 귀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십니까?

- ①국세청 「e-세로」 ②ASP ③ERP ④ARS ⑤세무서대리발행

1-1. 위 1번 질문에 대한 응답이 ②번인 경우 몇 개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①1개 ②2~3개 ③4~6개 ④7~9개 ⑤10개 이상

1-2. 위 1번 질문에 대한 응답이 ②번인 경우 시스템 사용수수료는 모두 합해 월 얼마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 ①10,000원 미만 ②10,000~35,000원 미만 ③35,000~50,000원 미만
④50,000~100,000원 미만 ⑤10,000원 이상

2. 귀사는 다음 중 어느 사업자에 해당하십니까?

- ①법인사업자 ②개인사업자

3. 귀사는 개업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3년 미만 ②3~5년 ③5~10년 ④10~20년 ⑤20년 이상

4.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도소매업 ④운수업 ⑤음식숙박업 ⑥금융보험업 ⑦전문직
⑧부동산 ⑨기타()

5. 귀사의 2010년도 연간 (과세분) 총 매출액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5억 미만 ②5~10억 미만 ③10~50억 미만 ④50~100억 미만
⑤100억 이상

6. 귀사의 2010년도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발행건수는 대략 얼마입니까?

- ①10건 미만 ②10~50건 미만 ③50~150건 미만 ④150~300건 미만
⑤300건 이상

7. 주로 누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업무(발행·전송 등)를 담당하십니까?

- ①대표자 ②회계담당 ③영업담당 ④기타()

8. 귀하의 담당 업무는 무엇입니까?

- ①대표자 ②회계담당 ③영업담당 ④기타()

II.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초기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표 또는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1. 지난해(2010년) 과세관청에서 실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홍보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요

1-1. 제도시행에 대한 홍보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들었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①발송안내문 ②e-세로 ③과세관청 집합교육 ④간담회 ⑤방송등 대중매체
⑥세무대리인 ⑦기타()

2. 제도시행에 대한 홍보교육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①발송안내문 ②e-세로 ③과세관청 집합교육 ④간담회 ⑤방송등 대중매체
⑥세무대리인 ⑦기타()

3.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의 만족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매우 그렇다		
1) 과세관청에서 주관하는 제도안내 및 홍보교육은 충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등 전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관련규정 및 메뉴얼등 참고문헌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전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홍보교육은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 다음의 항목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운영의 효과에 관한사항입니다. 해당번호에 √표 해주세요.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전반적으로 제도 도입으로 거래의 투명성 이 제고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성 이 향상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업무량 이 양적으로 줄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은 전반적으로 효과적 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V. 다음의 항목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번호에 √표 해주세요.

1. **거래행위 투명성 제고** 부분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공급시기(발행시기) 적용착오로 지연발행/지연전송/미발행/미전송 우려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2)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매입자 승인」 후 전송으로 지연전송/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3) ASP/ERP시스템 이용·발행 시 전송전 「취소 수정 삭제」 등 처리로 인한 마감시한 압박전송은 시스템 과부하·지연전송·미전송 사례가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4) ASP/ERP시스템 이용을 주로 하는 이유가 국세청 「e-세로」에 비해 전송기한(익월 15일)의 여유 가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5) ASP/ERP시스템 이용을 주로 하는 이유 가 국세청 「e-세로」에 비해 「취소·수정·삭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2. **납세협력비용 절감** 부분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국세청 「e-세로」시스템은 대량일관발행 및 수정·삭제가 안되기 때문에 민간구축(ASP,ERP) 발급(대행)시스템 이용사업자가 많고 이의 이용수수료 비용이 가중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2) 국세청 「e-세로」시스템은 발행 후 「수정·삭제」가 안되므로 수정신고 증가에 따른 수정처리·소명을 위한 회사내 고급인력충원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3) 전자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한 회사대표나 직원의 경우 세무대리인 협력비용 이 가중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4) 매입자가 원하는 발급시스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함으로 ASP/ERP시스템 이용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5) ASP시스템 이용·발행 시 회계시스템과 연계가 안되므로 국세청 「e-세로」 조회 후 다운받아 입력하는 이중업무처리 를 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6)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해도 보관용 세금계산서 출력을 병행하고 있어 이중으로 비용이 소요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3. 시스템과 사업자 개별정보 보호 부분에서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문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전송마감시한에 전산 과부하로 서버다운 이 일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2) 시스템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업자 개별정보 보호 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해당 없음

V. 다음의 항목들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부터 순서대로 골라주십시오.

우선순위 : (→ → → → → →)

- 1) 국세청 「e-세로」의 **대량일괄발행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 2) 발행채널간에 「**발행시기**」 규정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ex. 「발행시기」정의를 “국세청 「e-세로」에 입력된 때”)
-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를 **파격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ex. 발행세액의 1%, 한도 500만원)
- 4) 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복권담청제 실시**가 바람직하다.
- 5) 민간기업이 구축한 서로 **다른 발행시스템(ASP/ERP)간에 일원화 또는 표준화된 전산메뉴얼**이 있어야 한다.
(ex. 작성·발행·국세청 「e-세로」 입력시점 등 모든 내용)
- 6) “간단하고 알기쉬운 **사용자메뉴얼**” 제작 배포하여 제도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 7)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한 “**법령요약본**”을 제작 배포해야 한다.
(ex. “간단한 부가가치세 법령(공급시기 등) 요약본”)

V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직접 시행하시면서,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별도로 생각하시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에 대하여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개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